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제1호

2010. 5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 목 차

## 제 1 부

### I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세금/부담금 부과 논의 동향

1.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세금/부담금 부과 방안 .....	9
가. Stability Levy .....	10
나. Bonus Tax .....	12
2. 국가별 사례 .....	13
가. Stability Levy .....	13
나. Bonus Tax .....	18
3. 금융부문의 추가부담에 대한 IMF 중간보고서 .....	24
가. 개 요 .....	24
나. 도입 .....	25
다. 최근의 경제위기: 공공부문의 지원과 위기극복을 위한 조치 .....	26
라. 미래 위기 비용을 제한하거나 분담하기 위한 조치들 .....	28
마. 향후의 방향 .....	33

### II 최근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 동향

1. 부가가치세율 인상 관련 .....	37
가. 금융위기 이전 동향 .....	37
나. 금융위기 이후 동향 .....	38

<b>2.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관련</b> .....	44
가. 주요국의 논의 .....	44
나. 정책반영 사례 .....	46
<b>3. 부가가치세 행정 관련</b> .....	46
가. 부가가치세 행정 간소화 .....	47
나. 조세회피 방지 .....	48

## 제 2 부

### I 미국 / 캐나다

<b>1. 미국</b> .....	53
가. 미국의 2009 조세감면연장법안(Tax Extenders Act of 2009) .....	53
나. 오바마 대통령의 고용촉진법안 및 은행세 부과 제안 .....	56
다. 미국의 2011년 예산안 .....	58
라. 미국의 고용지원법안 승인 .....	66
마. 미국의 고용지원법안(HIRE Act) 서명·발효 .....	66
<b>2. 캐나다</b> .....	71
가. 캐나다(경기부양 목표의) 2010 예산안 .....	71

### II 유럽

<b>1. 프랑스</b> .....	77
가.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 - 환경부문 추가 .....	77

나.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 승인 .....	78
다. 프랑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 .....	80
라. 프랑스의 2009년도 Bonus tax 도입 .....	81
<b>2. 영국</b> .....	82
가. 영국 Tax Health Plan .....	82
나. 영국 기업과세 관련 조세체계안 .....	83
다. 영국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11) .....	85
<b>3. 포르투갈</b> .....	88
가. 포르투갈 2010예산안(Budget for 2010) .....	88
나. 포르투갈 2010 건축계획안 .....	91
<b>4. 노르웨이</b> .....	92
가. 노르웨이 구조조정세제 개편 .....	92
<b>5. 그리스</b> .....	94
가.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제 개편 .....	94
<b>6. 스페인</b> .....	95
가. 스페인 2010 재정법 공포 .....	95
<b>7. 아일랜드</b> .....	97
가. 아일랜드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 .....	97
나. 아일랜드 2010 재정법 발행 .....	98
<b>8. 핀란드</b> .....	100
가. 핀란드 부가가치세율 변동 .....	100
<b>9. 네덜란드</b> .....	101
가. 네덜란드 innovation box 제도 도입 .....	101

**Ⅲ 아시아**

<b>1. 일본</b> .....	105
가. 일본 2010 세제개혁 .....	105
<b>2. 싱가포르</b> .....	107
가. 싱가포르 2010년 예산안 .....	107
<b>3. 홍콩</b> .....	112
가. 홍콩 2010/11 예산안 .....	112



# I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세금 / 부담금 부과 논의 동향



## I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세금 / 부담금 부과 논의 동향

- 본절에서는 금융위기와 결부된 재정지출의 회수 및 금융기관 위기 대응 기금의 조성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새롭게 부과하려고 하는 세금 또는 부담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함
- 본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됨
  - 첫째, 세계 각국에서 금융기관에 새롭게 부과하려고 하는 세금 또는 부담금의 형태에 관하여 기술함
  - 둘째, 국가별로 논의되거나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례를 제시함

### 1.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세금/부담금<sup>1)</sup> 부과 방안

-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감수(risk taking) 행태를 통제하고, 금융위기 대응 재원을 확보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 등으로 금융기관에 새로운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또는 논의하고 있음
  - 2010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책임부담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의 도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 관련 세금/부담금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됨
  - 작년 11월 30일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IMF에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IMF는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검토내용 및 제안사항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지난 4월 23일부터 IMF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IMF의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sup>2)</sup>가 발표됨

1) 이러한 세금 및 부담금들은 최근 언론에서 '은행세(bank taxes)' 로 불리고 있음

2) IMF, "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by the Financial Sector: Interim Report for the G-20,"

- EC(유럽위원회)도 EU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4월초에 은행들로부터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음
- 최근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새롭게 부과하는 세금/부담금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함
  - 첫 번째 형태는 금융기관의 부채 중 위험성이 있는 부채를 대상으로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형태(이하 'Stability levy')임
  - 두 번째 형태는 금융기관의 이윤 및 임원에게 제공하는 성과보수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이하 'Bonus tax')임

### 가. Stability Levy<sup>3)</sup>

#### 1) 의의 및 목적

- Stability Levy는 과세대상을 금융회사의 특정 자산수준 또는 부채수준으로 한 후 일정 비율로 세금/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임
- Stability Levy의 과세대상을 특정 자산수준 또는 부채수준으로 하는 논리는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행위 및 이를 위해 자본건전성에 불리한 부채를 통하여 무리하게 자본을 조달하는 행위들로 발생하는 금융위험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임
  -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체계적인 위험(systemic risk)<sup>4)</sup>에 대한 사회비용을 내면화하고 과도한 위험부담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높은 레버리지를 가진 경우에는 체계적인 위험에 대해 높은 부담을 부과한다는 논리가 전제된 것임

---

April, 2010.

3) 'levy' 라는 용어는 세금(taxes)과 부담금(fees)을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지님.

4) 체계적인 위험이란 금융시스템 전체의 붕괴 위험을 의미함.

- Stability Levy의 목적은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행하는 투자 행위 및 이를 위해 자본건전성에 불리한 부채를 통하여 무리하게 자본을 조달하는 행위를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붕괴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것임

## 2) 과세방식

- Stability Levy의 과세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결기준 대차대조표의 특정한 잔액(예를 들면 자산 혹은 부채 등)에 대하여 특정 비율로 부과하는 형태임
  - 특정 비율은 단일 비율이 될 수도 있으며, 위험에 따라 조정된 비율이 될 수도 있음
  - 위험에 따라 조정된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부채가 야기하는 위험이 다르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비율로 세금/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함임

## 3) 특징

- 이 방식은 낮은 세율로 과세 가능하고 조세회피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장점이 있음
  - Stability Levy의 과세대상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특정 부채수준으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부과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동적인 금융시장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에 비하여 재배치나 조세회피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함
  - 그러나, 금융부문에서는 그동안 과세가 예정된 요소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과세대상을 줄이는 양상을 보여 왔기 때문에 특정 요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방식에 의해 확보된 재원의 사용방식은 현행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에 투입된 구제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예산에 편입하는 방식과 향후 금융시스템의 위기 시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 존재함

## 나. Bonus Tax

### 1) 의의 및 목적

- Bonus Tax는 은행가의 성과 보수, 즉 보너스에 대하여 일정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임
  - 은행가의 보너스에 대하여 과세하는 논리는 보너스 시스템에서의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해 은행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런 행태가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요인들 중 하나라고 보았기 때문임
  - 따라서 은행가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태를 억제하여 금융시스템의 체계적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Bonus Tax가 도입/논의되고 있음
  - 한편 2009년도 금융기관의 이익은 세금을 통한 구제금융이라는 정부지원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서 은행가의 입장에서 보면 우발적인 이득(windfall gains)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에 과세하여 구제금융 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에서도 Bonus Tax가 논의되고 있음

### 2) 특징

- Bonus Tax는 금융위기의 사후조치로 일회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영구적 방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음
  - 영국의 경우에 Bonus Tax는 사후조치로서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를 영구적인 방식으로 설계한다면 금융부문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Bonus Tax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행태 변화를 유발하여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
  - Bonus Tax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급여체계를 조정하여 기존의 보너스를 성과와 관련성이 덜한 보수(예를 들면, 기본급)로 변화시키는 행태를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유능한 은행가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제도권 금융기관(shadow banking sectors)’ 쪽으로의 이직을 촉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bonus tax가 부과되지 않는 나라로 금융기관을 이전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태 변화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저해할 수도 있음
  
- Bonus Tax의 부담은 명목적으로 금융기관이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금융기관의 주주, 경영자, 소비자 간에 분포될 것으로 예상됨
- 실질적인 세부담의 크기는 금융시장의 경쟁 정도(market competition)와 경영진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에 의존할 것임

## 2. 국가별 사례

### 가. Stability Levy

- 과세대상을 금융회사의 특정 자산수준 또는 부채수준으로 한 후 일정 비율로 세금/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인 Stability Levy에 대한 도입/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스웨덴은 법으로 도입이 되어 시행중이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캐나다와 일본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1) 미국의 사례: 금융위기책임부담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 가) 개요

- 오바마 대통령이 금년 1월 제안한 금융위기책임부담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FCRF)은 기본적으로 금융부문의 긴급구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자금을 회

수하기 위한 조치임

- 따라서 금융위기책임부담금을 약 10년 정도의 한정된 기간 동안 대형 금융기관의 특정 부채에 적용하여 금융기관의 긴급구제조치에 사용된 납세자의 돈을 회수하고자 함
    - 동 부담금은 미국의 구제금융안인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을 통해 투입된 자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부과될 예정임
  - 한편 금융기관의 규모가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대리변수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금융위기책임부담금은 대형 금융기관이 야기하는 체계적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영구적인 조치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함
- 미국 정부는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약 50개(상위 33개의 시중은행(commercial banks) 포함)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평균적으로 연간 90억달러(10년간 총 900억달러)의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증가될 재정수입의 60% 이상을 10개의 대형은행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함
    - 대형은행에 대해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인식하에서 대형은행들이 누리는 이득을 상쇄하는 효과도 존재함
  - 한편 부채(leverage)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의 사회적 비용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재화하도록 하여 높은 부채(high leverage)와 일반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과도한 위험부담(excessive risk-taking)을 통제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나) 적용대상

- 금융위기책임부담금은 대형 금융기관의 특정부채에 부과될 예정임
  - 대형 금융기관이란 연결 자산기준으로 500억달러를 넘는 기관을 의미하여, 부과대상 금융기관은 보증예금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thrift holding companies), 보증보험회사(insurance or other companies that owned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증권 중개기관 등을 포함함
    - 부과대상 금융기관에는 외국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금융기관도 포함하지만, 소규모/

지역 은행(small or community banks)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

-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 부채란 전체 자산에서 안정적인 부채나 자본이 제외되는 비보장성 부채( uninsured liabilities)를 뜻함

#### 다) 과세방법

- 과세대상 부채(covered liability)에 대하여 0.1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됨
  - 과세대상 부채 = 자산 - Tier 1 Capital - FDIC에 의해 보장된 예금<sup>5)</sup>
    - 자산은 전 세계 기준의 연결자산(consolidated assets)을 의미함
    - Tier 1 자본과 FDIC에 의해 보장된 예금을 금융위기책임부담금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자본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장되는 예금은 안정적인 원천으로 분류되기 때문임
    - Tier 1 자본은 1988년 바젤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주요 자기자본의 형태 중 하나임<sup>6)</sup>

#### 라) 장점

- 미국 방식은 중·소형은행에는 부과되지 않고 대형은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은행이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음
  - 왜냐하면 대형은행은 이러한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소형은행과 여전히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형은행에 경쟁력을 주어서 대형은행이 부담금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어렵게 함

#### 마) 제도의 도입 진행상황

- 오바마 대통령은 1월 14일, 긴급구제금융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위기책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5) FDIC는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로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이고, FDIC의 예금보장한도는 1인당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250,000이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000로 환원될 예정임.

6) BIS비율은 위험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이 때 자기자본은 기본자본(Tier 1)과 보완자본(Tier 2)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Tier 1 Capital)은 영구적으로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되며 회계상 자본과 거의 같은 의미이다. 이에 비하여 보완자본(Tier 2 Capital)은 회계상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자기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부채도 포함된다. 후순위채가 대표적이다.

-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해 2월 중에 의회에 제출함
  - 은행세는 2010년 6월 30일부터 10년간(단, TARP의 원금상환일이 이보다 늦은 경우에는 원금상환일까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는 향후 10년간 약 900억 달러 또는 약 12년간 1,170억달러로 추산됨
  - 은행세 부과로 조달된 세수는 TARP로부터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계획임
  
- 3월에 민주당이 대형은행에 금융위기책임부담금을 부과하는 금융개혁법안(Financial Reform Bill)을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논란을 계속하며 계류중임
  
- 4월에 들어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소된 것을 계기로 금융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초당적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

## 2) 스웨덴의 사례: 금융안정기금(Swedish Financial Stability Fund)

### 가) 개요

- 스웨덴에서는 금융위기 시기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으로 2009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화부담금(stability fee)을 수취하여 금융안정기금(Swedish Financial Stability Fund, SFSF)을 운영하고 있음
  - 동 기금의 목적은 스웨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키는 위험에 대응하는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
    - 과거 금융위기 시기에는 금융부문의 안정성 보호정책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국가자원이 직접 사용되었으나, 은행 및 기타 신용기관이 미리 중앙정부에 납부한 안정화부담금(stability fee)을 통해 금융안정펀드(SFSF)를 운영한다면 향후 금융위기 도래 시 정부의 재정이 아닌 동 기금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금융기관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자금조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중앙정부예산과 독립된 금융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 시기에 재정안정성 보호를 목적으로 은행보증(bank guarantees), 자본투입(capital injections), 긴급지원(emergency support),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 등 네 가지 대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될 것임
- 금융안정기금은 부과방식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금융위기책임부담금과 비슷하지만 징수된 부담금이 기금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안정화부담금의 수입은 2009년 약 2억 5천만유로로 추산되고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이 GDP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안정화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금융안정기금은 2011년 예금보험기금과 통합될 예정에 있음
  - 안정화부담금과 예금보험부담금 간의 통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나) 적용대상 및 시기

- 안정화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스웨덴에 설립된 금융기관이며, 적용시기는 2009년부터임

#### 다) 과세방법

- 안정화부담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 특정 채무액에 0.036%를 곱하여 산출함
  - 특정 채무액이란 총자산에서 지분자본(equity capital), 후순위 채무증권(junior debt securities), 안정화부담금을 납부하는 회사 간의 채무거래 및 평균 담보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함
  - 적용률은 0.036%이지만,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9년 및 2010년에는 0.018%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또한 적용률은 2011년부터 위험에 기초하여 계산될 예정에 있으나, 위험의 측정방

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3) 독일<sup>7)</sup>

- 독일은 새로운 은행부담금을 도입하기로 3월 31일 각의에서 결정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된 바 없음
- 은행부담금은 자산총액에서 고객들의 예금을 제외한 잔액에 부과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은행 자산의 위험도와 자산시장 관여도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보다 자세한 규정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고, 7월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임
- 매년 부과하며, 이 금액은 연간 약 12억~16억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나. Bonus Tax

### 1) 영국의 사례

#### 가) 개관

- 영국에서는 2009년 12월 9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은행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은행급여세(BPT)를 도입함
- 이는 과도한 위험부담에 대해 보상하는 은행업의 보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임
  - 은행급여세는 은행이 상여금 지급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자본상태를 고려하여 미래 손실위험을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역할을 함

7)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02304252704575155280046672308.html> 2010년4월1일자

- 영국 재무부는 당초 은행급여세로 재정수입이 약 5.5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최근 정보에 의하면 이는 약 250억유로로 추정되고 있음
- 은행급여세는 2010년 4월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나 정부는 이를 연장할 것을 고려 중에 있음

#### 나) 은행급여세 상세

- 은행 및 건축조합이 그 종업원에게 £25,000을 초과하여 재량 상여금(discretionary bonus)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은행 및 건축조합은 그 초과금액에 5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급여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은행급여세는 종업원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상여금을 지급한 은행 등에 부과함
  - 이는 2009년 12월 9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지급한 상여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관련 세액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 은행급여세와 관련하여 그 과세대상 법인, 은행종업원, 관련 보수의 정의와 아울러 반조세회피 규정, 보고 및 기장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과세대상 법인(Taxable company)

- 은행급여세의 과세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음
  - 은행
  - 은행그룹 내의 영국거주 투자법인 또는 영국거주 금융거래법인
  - 건축조합(building society)
  - 건축조합그룹 내의 영국거주 투자법인 또는 영국거주 금융거래법인
  - 해외 은행의 영국지점 또는 은행그룹 내의 해외 금융거래법인의 영국 지점

(2) 관련 은행종업원(Relevant Banking Employee)

- 개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은행급여세 과세대상 법인의 ‘관련 은행 종업원(Relevant Banking Employee)’이 될 수 있음
  - 과세대상 법인이 그를 은행업무에 고용(Banking Employment)한 경우
  - 개인이 2009/10 과세기간 동안 영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해당 기간중 영국에서 은행업무에 고용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은행업무에 고용(Banking Employment)은 전체 또는 주된 업무가 관련 규제활동(relevant regulated activities)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은행업무에 고용된 것으로 봄
  - 관련 규제활동(relevant regulated activities)은 금융서비스당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금융기관에 특정 유형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예금접수
    - 본인으로서 투자 취급
    - 대리인으로서 투자 취급
    - 투자거래 주선
    - 고객을 대신하여 투자보호 및 관리
    - 규제대출계약

(3) 관련 보수(Relevant Remuneration)

- 은행급여세가 부과되는 관련 보수라 함은 관련 은행종업원에게 £25,000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를 의미함
  - 관련 보수의 범위는 과세대상 법인이 관련 은행종업원에게 종업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2003 제62조에 따라 지급한 소득(earnings)임
    - 이와 같은 고용을 이유로 제공한 수당(benefit)
    - 미래지급계약에 따른 금액 및 실질적으로 소득(earnings)에 해당하는 대여(loans) 역시 관련 보수로 간주함

- 관련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 은행종업원에게 소득세가 청구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관련 보수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정기급여 및 정기수당(Regular salary or wages or regular benefits)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관련 급여 및 수당이 회사의 성과, 해당 종업원의 성과 등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계약상 의무(Contractual Obligation)
  - 관련 보수에서 제외되는 계약상 의무라 함은 다음이 있기까지 관련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지급액이 특정인의 재량 없이 고정되거나 고정될 수 있을 것
  - 지급총액 또는 지급받는 종업원 수가 특정인의 재량 없이 고정되거나 고정될 수 있을 것
  - 2009년 12월 9일 이전에 발생한 계약상 의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은행급여세가 적용되지 않음
- 주식관련 보수(Share-related awards)
  - 공인 주식인센티브계획(approved share incentive plan) 또는 SAYE 옵션제도에 따라 부여한 주식 및 주식옵션의 경우 관련 보수에서 제외함

(4) 반조세회피 규정

- 은행급여세에서는 은행이 상여를 지급하면서 은행급여세의 부과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반조세회피 규정을 두고 있음
- 예를 들어, 종업원에 대한 대여가 실질적으로 상여금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종업원급여신탁 및 유사 중개기관을 통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은행급여세를 부과하고 있음

(5) 보고 및 기장의무

- 은행급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은행은 2009년 12월 9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의 기간 동안 £25,000을 초과하여 지급한 모든 상여금에 대해 그 상세내역을 보고해야 함

- 또한 은행은 해당 기간 동안 £25,000을 초과하여 지급한 모든 상여금에 대해 그 상세내역을 기록해 두어야 함
  - 해당 상여금이 은행급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함
  - 은행이 관련 기록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정 신고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2) 프랑스의 사례

### 가) 개관

- 프랑스는 2010 재정법(2010 Finance Act) 일부를 개정하여 2009년 소득에 한하여 Bonus Tax를 도입하기로 확정함
- Bonus Tax와 관련된 조세수입 예상액은 약 3.625억유로이며,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은행근로자가 이 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Bonus Tax는 특정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수(remuneration)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과세함

### 나) 과세대상자

- Bonus Tax의 과세대상 중 금융기관 및 종사자는 다음의 경우임
  - 특정한 금융기관은 프랑스 금융재정법 등에 의한 신용기관과 투자은행이며, 프랑스 내 사업장은 특정한 금융기관에 포함되고, 보험회사와 자산운용 회사는 bonus tax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한 금융기관에서 제외

- 과세대상 종사자는 활동이 금융기관을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금융시장 전문가와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금융시장 전문가이고, 지원부서(back office)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회계 서비스나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middle office)의 종사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다) 과세대상소득

- 소득금액(basis for bonus tax)은 보수 중에서 종업원의 개별적, 집합적 성과 등에 연동하여 변동하는 부분임
  - 성과 등에 연동하여 변동하는 부분은 현금, 주식, 스톡옵션 및 유리한 조건에서의 주식매수권이 됨
    - 주식, 스톡옵션의 평가는 IFRS를 적용하는 회사가 연결제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계산한 공정가치로 함
  - 종업원 부담 사회보험기여금은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사용자(employer) 부담 사회보험기여금은 과세소득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함

#### 라) 세율 및 세액

- 세액 = (보수 중에서 종업원의 개별적, 집합적 성과 등에 연동하여 변동하는 부분 - 27,500유로) × 50%

#### 마) 기타

- Bonus Tax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가능하고, 주식, 스톡옵션 부여일(vested date) 이후 실제로 취득하거나 실행한 금액이 bonus tax 과세소득 계산 시보다 낮을 경우에도 기납부한 bonus tax에 대한 조정이나 환급을 할 수 없음

### 3) 그리스의 사례

- 2010년 3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세법초안의 내용으로 특정한 소득형태에 대하여 특별세율을 적용<sup>8)</sup>하도록 하는데, 특정한 소득형태 중에 금융 부문의 보너스가 포함되며 이 때 적용되는 특별세율은 90%로 함

### 4) 포르투갈의 사례

- 포르투갈의 2010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국회에 2월 26일 제출되고 3월 12일 승인됨
- 과세내용은 일반기업의 임원이나 관리자들의 보너스가 연간소득의 25% 이상이고 27,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35%의 자율적 가산세(penalty tax)를 부과하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너스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세를 부과함

## 3. 금융부문의 추가부담에 대한 IMF 중간보고서

### 가. 개요

- 지난 4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보고된 IMF 중간보고서는 금융권(financial sector)의 부담금(contribution)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형태(form)를 순차적으로 제안<sup>9)</sup>
  - ① 금융안정분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FSC)
  - ②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

8) 특정한 소득형태에 대한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금융부문의 보너스 외에 비거주자 수혜자에 대한 사용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퇴직보상금(Termination indemnity)에 대하여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9) IMF는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안정분담금(FSC)을 부과하고 추가적인 재정의 필요시 금융활동세(FAT)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금융안정분담금은 향후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따른 재정비용을 금융권에 부담시키는 일종의 분담금임
  - 동 분담금을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이유는 재정비용 충당 목적 이외에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감수(risk-taking) 행태를 줄이려는 목적도 존재함
  - 동 분담금은 초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 단일비율로 부과되나, 분담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성 및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에 대한 기여와 전반적인 위험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동 분담금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기금(resolution fund)으로 축적되거나 일반세입에 귀속시킬 수 있음
  
- 금융활동세는 금융기관의 이윤(profits)과 보수(remuneration)의 합계액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임
  - IMF에서는 금융권으로부터 금융안정분담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금이 요구된다면 금융활동세로 거둘 것을 제안함
  - 또한 IMF에서는 금융활동세로 징수한 원금은 일반세입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함
  - 금융활동세는 그 구체적인 형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지불하는 모든 보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금융활동세는 일종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며, 현행 부가가치세가 금융서비스에 대해 면세됨에 따라 금융권이 과도하게 커지는 위험을 동 세금을 통해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금융활동세의 과세대상으로 일정 수익률 이상의 이윤만을 포함시킨다면 금융활동세는 금융권의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될 것이며, 이는 과도한 위험감수 행태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 도입

- 본 보고서는 2009년 G-20 정상회의(피츠버그)의 요청에 따른 중간보고이며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까지 중간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임

- 보고서의 목적은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재건을 위해 개입하면서 발생한 부담을 금융 부문에 부담시키면서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I장은 도입, 제II장은 현재의 방안에 대한 평가, 제III장은 미래에 가능한 대안 제시, 제IV장은 향후 방향을 제시함
  - 특히, 제II장에서는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을 추정하고, 각국의 방안을 평가함
  - 제III장에서는 미래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위기의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제한하기 위한 방안들을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발전시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

#### 다. 최근의 경제위기: 공공부문의 지원과 위기극복을 위한 조치

##### 1) 제공된 공적 지원

- 금융위기로 인하여 G-20 정부는 금융부문에 확장적인 지원을 했음
  - 지원방안에는 자본지원, 자산구매 및 보호책, 보증, 유동성 규정, 중앙은행에 의한 지원, 예금보험범위의 확장 등이 포함됨
- G-20 정부가 약속한 공적 지원은 큰 규모였으나, 이 중 일부만이 실제 사용되었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사용되지 않았음
  - 2009년 말 현재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직접지원에 따른 순재정비용은 평균적으로 GDP의 2.7%로 추정됨
  - 정부 보증금액(G-20 GDP의 약 11%)을 제외하고, 정부의 직접지원을 위해 마련한 재정규모는 평균적으로 GDP의 6.2% 정도였고, 이 중 GDP의 3.5% 정도가 사용되었으며, 2009년 말 현재 금융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을 제하면 GDP의 2.7% 정도가 사용됨

- 과거의 위기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순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위기 동안 경험한 재정위험(fiscal exposures)을 상당히 과소평가한 것임
  - 금융위기와 관련한 재정비용, 경제비용, 사회비용을 폭넓게 보면 매우 상당한 수준임
  - 선진 G-20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는 2008~2015년에 걸쳐서 GDP의 40%p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상당부분은 금융위기와 관련됨

## 2) 채택되었거나 고려중인 조치들

- 금융위기의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국이 채택하거나 고려중인 조치들은 금융부문에 대한 부담금(levies)과 보너스에 대한 과세 등 2가지 형태임
  - 미국 정부는 지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위기책임분담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CR)을 계획하고 있음
    -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에 보장할 부채의 0.15%를 매년 부과하며, FCR fee는 10~12년에 걸쳐 900억~1,17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됨
    - FCR은 TARP(Trouble Asset Relief Program)의 비용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될 것임
    - 현재 입법부에서 도입을 검토중임
  - 영국과 프랑스는 한시적인 보너스 과세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미국의 금융위기책임분담금처럼 특정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님
    - 2010년 4월 5일 종료된 영국의 은행급여과세(Bank Payroll Tax)는 2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보너스지급액의 50%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20억파운드의 재정수입이 예상됨
    - 프랑스는 2009년 회계기간 동안 지불된 보너스에 대하여 영국과 유사한 범위를 대상으로 50%를 과세하며 이를 통하여 3.6억유로의 재정수입이 예상됨
- 재정지출을 회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로는 첫째, 금융위기로 인하여 발생했던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한 과세상 공제를 제한하거나 둘째,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부과하지는 주장도 있었음

### 3) 평가

-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된 재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 중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backward-looking' tax에 의한 것임
  - backward-looking tax는 사후적인 관점의 과세로, 세금 부과 발표 이전에 이미 결정된 몇 가지 속성(예를 들면, 대차대조표 변수 중에서 논리적으로 선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함
  - 이 방법은 세금을 피하기 어렵고 세금부담의 변화로 인하여 행동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을 금융부문의 소유주나 경영자에게 집중함으로써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 금융시스템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음
  
- 각국의 관심은 금융위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재정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에서 미래의 금융시장 실패와 위험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옮겨가고 있음

## 라. 미래 위기 비용을 제한하거나 분담하기 위한 조치들

### 1) 목적과 조치

- 국제기준 결정권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실패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강화된 금융규제 및 감독하에서도 금융실패의 위험은 존재할 것임
  
- 미래 금융실패와 관련된 재정비용을 방지하거나 분담하도록 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주된 목적과 3가지의 부수적인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지만 하나의 조치로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2가지 주된 목적
  - 금융부문이 직접 지원에 따른 순재정비용의 기대가치를 책임져야 함
  -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비용을 감소시켜야 함
- 3가지 추가적인 목적
  - 실행하기 쉬워야 하며, 핵심 체계(core framework)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적당한 수준으로 요구하여야 함
  - 금융위기에 따른 큰 의미의 재정적·경제적 비용을 반영하여 금융부문의 부담을 결정하여야 함
  - 기존에 존재하는 조세왜곡을 완화하거나 추가적인 왜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규제와 과세로 인한 전체적인 부담을 고려하여야 함
- 고려중인 조치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기타 과세조치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 조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짐
  -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조치는 직접적인 공공지원에 대한 순재정지출을 회수하고, 과도한 위험감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다른 과세조치는 금융기관에 폭넓게 조세부담을 지우고, 금융기관들의 행태에 따른 잠재적인 부작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및 금융활동에 대한 과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를 결합하는 정책은 금융실패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들에 부합할 수 있음

## 2)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금(Levies on Financial Institutions)

-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은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고,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부담금을 기금으로 하고, 일부는 일반재정에 충당함
  - 부담금은 기금이나 일반세입 모두에 사용이 가능하며 미국, 스웨덴, 독일은 기금에 사용함
    -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해결 능력을 확장하고,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

- 기관을 위한 정리기금(resolution fund)을 만들기 위해서 분담금을 설정할 계획임
- 스웨덴은 금융기관의 분담금에 의해 조성된 금융안정화기금을 만들었음
- 독일은 상업은행에 분담금을 부과해서 정리기금을 조성하는 등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 정리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은 정리기구(resolution agency)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일반적인 예산과정과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 정리기구의 주된 기능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를 관리하고, 분담금의 기준, 범위, 관련 상위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임
- 기금으로 조성된 재정규모가 위기로 인한 당면 재정수요(up-front financial needs)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건부 신용 한도액(contingent credit line)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분담금을 설계할 때 결정적인 요소는 부과의 범위(perimeter)와 부과의 기준(base), 부과율(rate), 부과율의 조정임
- 부과의 범위(perimeter)는 은행과 같이 대상을 좁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금융기관과 같이 대상을 넓게 할 수도 있는데, 금융 안정을 강화하는 공공재는 모든 기관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과의 기준(base)은 위험의 감소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분담금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넓은 대차대조표의 기준(broad balance sheet base)을 추천함
- 넓은 대차대조표기준은 대차대조표 외의 항목 중 몇 가지를 반영하고 자본과 보증된 부채를 제외하는 방식임
- 부과율(rate)은 위험을 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자본기반(capital base)을 저해할 정도의 높은 부담을 부과하지 말아야 함
- 부과율은 과거 금융위기의 경험과 직접적인 순재정비용에 기초하여 설정될 수 있고, 금융시스템의 위험특성(risk profile)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함
- 도입 및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부과율을 모든 금융기관에 통일하여 적용하고, 향후 시간이 경과하면 금융기관별 체계적 위험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 부담금 및 기금은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일련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는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정리를 용이하게 할 것임
  - 일련의 원칙은 기금의 목표규모, 연간 부담금의 수준, 부과의 기준, 외국 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처리방안, 채권자 유형별 처리방안 등을 포괄하여야 함
  
-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부과하는 복구부담금(Recovery charge)은 사전적인 부담금에 대한 보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사후적인 비용분담금을 유일한 조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후적인 비용분담금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살아남은 금융기관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 금융기관들이 비용분담을 가장 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경기순응적(pro-cyclical)일 수 있다는 점

### 3) 추가적으로 가능한 과세조치(Possible Additional Tax Instruments)

- 앞서 논의한 부담금 외에도 직접적인 재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조치들이 고려되고 있음
  -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시킨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직접지원의 재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일반세입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기 위함임
  - 또한 금융부문의 의사결정 및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바로 잡기 위함임
  
- 가능성 있는 과세조치로 금융거래세(taxing financial transaction, FTT)와 금융활동

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가 있음

- 금융거래세 방안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외화교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tobin tax”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는 분담금 및 기타 과세조치를 취하는 목적들에 부합하지 않아서 추천되지 않음
  - 거래량은 특정 금융기관에 전달되는 혜택이나 특정 금융기관에 부과되어야 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함
  - 또한 금융거래세는 금융불안의 원천이 되는 핵심요소, 즉 체계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기관의 규모, 상호결합, 대체능력 등과 같은 주요 특성을 목표(target)로 하는 과세가 아님
  - 이와 더불어서 세부담의 대부분을 금융부문에서의 소득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음
  
- 금융활동세는 금융기관의 임금과 이익의 합에 부과되는 것이고 목적의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규모가 확대된 금융기관의 규모 축소나 과도한 위험감당 완화 등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음
  - 금융기관의 보수와 이윤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금융활동세는 충분한 세입을 거둘 수 있고, 과세대상의 기준을 적절하게 선정하면 다양한 목적들을 충족시킬 수 있음
  - 금융활동세는 금융부분의 지대(rents)에 대한 과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과도한 보수 및 이윤을 과세기준으로 적절하게 선정하고 자본에 대한 정상이윤을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 금융부분의 지대에 과세하는 것과 유사할 것임
  - 통상 부가가치세 면세인 금융기관은 면세로 인해 금융기관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활동세를 적절하게 설계하면 부가가치(예를 들면, 임금 등에 과세)에 직접 과세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다만, 과세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율로 과세되어야 함
  - 금융활동세는 금융부문에서의 과도한 수익률(excess return)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설계한다면 과도한 위험감수(excessive risk-taking)를 완화할 수 있음

## 마. 향후의 방향

### 1) 개혁의 요소

- 금융부문의 실패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비용은 신뢰할 만하고 효과적인 정리 메커니즘과 연계된 '금융안정분담금(FSC)'을 통하여 충당되어야 함
- 금융부문의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한 경우 이는 금융활동세(FAT)를 통하여 징수하여야 함
-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 향후 있을 수 있는 금융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 2) 기타 고려요인 및 최종보고서 준비를 위한 조치들

- 새로운 조치들의 도입이 분명히 요구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안정화하려는 목적과는 반대로 작동하는 기존 조세의 왜곡을 줄이는 것도 필요함
  - 부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유리하게 하는 세제 왜곡은 자본수익률에 대한 조세감면 또는 이자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와 같은 법인세 개정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음
- 새로운 부담금 및 과세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은 금융규제 개혁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과세조치들과 규제조치들이 과거에는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실행되었지만 이제는 금융부문에 대한 적절한 부담 및 유인체계 형성 등을 위해 서로 적절하게 조합되는 전체론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함
- 새로운 부담금 및 과세조치들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분석이 필

요하며 최초의 제안을 발전시켜서 최종보고서를 완성시킬 것임

-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될 최종보고서에서는 제안된 조치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평가할 예정임
  - 특히 2010년 4월의 장관회의 논의를 지침으로 하고, 더 많은 자문을 반영할 예정임
  - 또한 IMF, FSB, BCBS 간의 공동작업을 진행하여 금융부문에 부과한 조세 및 규제 부담의 누적적인 수량 효과를 검토할 것임

## II

# 최근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 동향



## II 최근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 동향

- EU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입 확보
  - 면세 및 영세율 대상 축소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
  - 부가가치세 행정 측면: 간소화, 조세회피 방지

### 1. 부가가치세율 인상 관련

#### 가. 금융위기 이전 동향

- 금융위기 이전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기업 관련 세금인하 정책에 대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시도하였음
  - EU에서는 동유럽 국가의 낮은 노동비용으로 국가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자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으로 과거 5년간 기업 관련 세금을 인하한 바 있음
  -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이와 같이 기업 관련 세금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그 재정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음
-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시도한 국가로는 독일, 네덜란드 등이 있음
  - 독일의 경우 2007년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큰 폭으로 인상한 바 있음
  -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 역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시도했으나 2008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실행하지 못함
    - 네덜란드의 경우 2008년 예산안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p(19%→20%)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둔화된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함

## 나. 금융위기 이후 동향

-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확장 재정정책의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되자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도한 국가는 발트해 연안의 국가로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음
  - 발트해 연안의 국가에 이어 헝가리, 체코, 아이슬란드 역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음
  - 또한 최근에는 그리스, 아일랜드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으며,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 역시 그 인상계획을 확정하였음
  
- 2008년 이후 유럽에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 발트해 연안의 국가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는 광범위한 조세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18%의 단일세율체계(flat rate tax system)로 전환한 바 있음
  
-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정부부채가 급증하자 세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9년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림
  - 에스토니아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p 인상함(18%→20%)
  - 라트비아는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3%p 인상 적용함(18%→21%)
  - 리투아니아는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p 인상(18%→19%)한

데 이어 2009년 9월 1일부터 이를 2%p 추가 인상함(19%→21%)

## 2) 서유럽 국가

- 영국에서는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5%p 한시적으로 인하(17.5%→15%)한 바 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17.5%의 세율로 복귀함
  - 영국의 경우 치솟는 정부부채<sup>10)</sup>를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20%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중임
  
- 아일랜드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0.5%p 인상함(21%→21.5%)
  -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한 감세정책과 맞물려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0.5%p 인하됨(21.5%→21%)
  
- 스위스에서 현재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7.6%이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를 0.4%p 인상하여 8%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경감세율 역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0.1%p 및 0.2%p 인상 적용함(2.4%→2.5%, 3.6%→3.8%)
  - 스위스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 plan)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해보험에서 축적된 결손은 CHF 130억에 달하며, 매해 CHF 14억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상해보험을 비롯한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sup>11)</sup>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10) 영국에서 국가부채는 향후 몇 년 내에 £1,200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1) 스위스의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은 연금보험(old-age and survivor insurance),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 재해보험(accident insurance), 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음.

### 3) 북유럽 국가

- 아이슬란드의 경우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p 인상함(24.5%→25.5%)
- 핀란드는 2010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p 인상할 예정임(22%→23%)
  - 경감세율 역시 2010년 7월 1일부터 1%p 인상함(8%→9%, 12%→13%)

### 4) 남유럽 국가

- 그리스는 2010년 3월 15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p 인상함(19%→21%)
  - 경감세율은 0.5%p 및 1%p 인상함(4.5%→5%, 9%→10%)
- 스페인은 2010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p 인상할 계획임(16%→18%)
  - 경감세율(reduced tax rate)은 1%p 인상하되(7%→8%), 4%의 최저세율(lowest tax rate)은 그대로 유지함<sup>12)</sup>

### 5) 동유럽 국가

- 헝가리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5%p 대폭 인상함(20%→25%)
  - 한편, 기본식료품 및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18%의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을 도입하고, 5%의 경감세율(reduced rate)<sup>13)</sup>은 그대로 유지함

12) 스페인에서 경감세율은 음식(food), 거주주택(dwelling), 교통(transport), 여행(tourism) 등에 적용되며, 최저세율은 기본 생필품(basic necessities)에 적용됨.

13) 경감세율의 경우 도서, 신문, 잡지, 특정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체코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p 인상함(19%→20%)
  - 경감세율은 5%p 인상함(5%→10%)

6) 종합

- 2008년 이후 유럽국가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사례를 표준세율과 경감세율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음

<표 1> 유럽국가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사례: 표준세율

국가		2008.1.1	인상률(%p)	2010.7.1	비고
발트해	에스토니아	18%	2↑	20%	· 2009.7.1: 2%p 인상
	라트비아	18%	3↑	21%	· 2009.1.1: 3%p 인상
	리투아니아	18%	3↑	21%	· 2009.1.1: 1%p 인상 · 2009.9.1: 2%p 추가 인상
서유럽	영국	17.5%	-	17.5%	· 2008.12.1: 2.5%p 인하 · 2010.1.1: 2.5%p 인상
	아일랜드	21%	-	21%	· 2009.1.1: 0.5%p 인상 · 2010.1.1: 0.5%p 인하
	스위스	7.6%	-	8%	· 2011~2017: 8% 적용 (0.4%p 인상)
북유럽	아이슬란드	24.5%	1↑	25.5%	· 2010.1.1: 1%p 인상
	핀란드	22%	1↑	23%	· 2010.7.1: 1%p 인상
남유럽	그리스	19%	2↑	21%	· 2010.3.15: 2%p 인상
	스페인	16%	2↑	18%	· 2010.7.1: 2%p 인상
동유럽	헝가리	20%	5↑	25%	· 2009.7.1: 5%p 인상
	체코	19%	1↑	20%	· 2010.1.1: 1%p 인상

〈표 2〉 유럽국가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사례: 경감세율

	2008.1.1	인상률(%p)	2010.7.1	비고
스위스	2.4%	0.1↑	2.5%	· 2011~2017: 2.5% 적용
	3.6%	0.2↑	3.8%	· 2011~2017: 3.8% 적용
핀란드	8%	1.0↑	9%	· 2010.7.1: 1%p 인상
	12%	1.0↑	13%	· 2010.7.1: 1%p 인상
그리스	4.5%	0.5↑	5%	· 2010.3.15: 0.5%p 인상
	9%	1.0↑	10%	· 2010.3.15: 1.0%p 인상
스페인	4%	-	4%	
	7%	1.0↑	8%	· 2010.7.1: 1%p 인상
체코	5%	5.0↑	10%	· 2010.1.1: 5%p 인상

〈참고자료〉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 추이<sup>1)</sup>

(단위 : %)

국가	도입 연도	표준세율									경감세율 (201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3	2005	2007	2010	
호주	2000	-	-	-	-	10	10	10	10	10	-
오스트리아	1973	20	20	20	20	20	20	20	20	20	10, 12
벨기에	1971	19.5	20.5	21	21	21	21	21	21	21	6, 12
캐나다	1991	7	7	7	7	7	7	7	6	5	-
체코공화국	1993	-	23	22	22	22	22	19	19	20	10
덴마크	1967	25	25	25	25	25	25	25	25	25	-
핀란드	1994	-	22	22	22	22	22	22	22	23(22)2	9(8), 13(12) <sup>2)</sup>
프랑스	1968	19	18.6	20.6	20.6	20.6	19.6	19.6	19.6	19.6	2.1, 5.5
독일	1968	14	15	15	16	16	16	16	19	19	7
그리스	1987	18	18	18	18	18	18	18	19	21(19)3	5(4.5), 10(9) <sup>3)</sup>

국가	도입 연도	표준세율									경감세율 (201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3	2005	2007	2010	
헝가리	1988	25	25	25	25	25	25	25	20	25	5, 18
아이슬란드	1989	22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5.5	7
아일랜드	1972	21	21	21	21	21	21	21	21	21	4.8, 13.5
이탈리아	1973	19	19	19	20	20	20	20	20	20	4, 10
일본	1989	3	3	3	5	5	5	5	5	5	-
한국	1977	10	10	10	10	10	10	10	10	10	-
룩셈부르크	1970	15	15	15	15	15	15	15	15	15	3, 6, 12
멕시코	1980	10	10	15	15	15	15	15	15	15	-
네덜란드	1969	18	18	18	18	18	19	19	19	19	6
뉴질랜드	1986	13	13	13	13	13	13	13	13	12.5	-
노르웨이	1970	22	22	23	23	23	24	25	25	25	8, 14
폴란드	1993	22	22	22	22	22	22	22	22	22	3, 7
포르투갈	1986	16	16	17	17	17	19	19	21	20	5, 12
슬로바키아	1993	-	25	23	23	23	20	19	19	19	10
스페인	1986	13	16	16	16	16	16	16	16	18(16) <sup>4)</sup>	4, 8(7) <sup>4)</sup>
스웨덴	1969	25	25	25	25	25	25	25	25	25	6, 12
스위스	1995	-	6.5	6.5	6.5	7.5	7.6	7.6	7.6	7.6 <sup>5)</sup>	2.4, 3.6 <sup>5)</sup>
터키	1985	10	15	15	15	17	18	18	18	18	1, 8
영국	1973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5

주: 1) OECD 회원국 중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29개국의 1992년 이후 부가가치세율 추이를 정리한 표임. 표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2008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에 해당함.

2) 2010년 7월 1일부터 인상세율 적용

3) 2010년 3월 15일부터 인상세율 적용

4) 2010년 7월 1일부터 인상세율 적용

5)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표준세율은 7.6%→8% 경감세율은 2.4%→2.5%, 3.6%→3.8%로 인상 적용

자료: Consumption Tax Trends(2008), [http://en.wikipedia.org/wiki/Value\\_added\\_tax](http://en.wikipedia.org/wiki/Value_added_tax), [www.tmf-vat.com](http://www.tmf-vat.com), [www.ibfd.org](http://www.ibfd.org)

## 2.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관련

### 가. 주요국의 논의

#### 1) 영국에서의 논의

-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는 국가경제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정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보다는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폐지를 통한 세원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sup>14)</sup>
  - 대법인 및 부자에 대한 증세 결과 해당 납세자들이 영국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재정결손 회복을 위해 대법인 및 부자에 대한 증세보다는 나은 정책임을 주장함
  
- 과세기반 확대방향
  - 음식, 아동의류, 공익설비 및 주택건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폐지함
    - 단, 연소득이 £17,000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유지함
  - 영세율 폐지 결과 연간 £80억의 추가 세수 확보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개인소득세에서 50%의 최고세율 폐지 및 국민보험료 0.5%p 인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부가가치세제의 복잡성 감소 및 다른 국가와의 균형 역시 기대되고 있음
    - 영국은 EU 국가 중 음식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네 개 국가 중 하나이며, 아동의류에 대해 영세율 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세 개 국가 중 하나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품목의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의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면세 등의 적용대상이 늘어날수록 부가가치세제가 왜곡되고 과세기반은 더욱 축소되어, 세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됨을 지적하고 있음

14) 중도우파 싱크탱크인 Reform의 보고서(Reality Check: Fixing the U.K.'s Tax system)

- 극단적으로 미국에서 부가가치세 도입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의 경우 여러 면세조항으로 인해 구멍이 많이 뚫린 ‘스위스의 치즈’ 를 닮았다고 비판함
- 참고로, 영국에서는 1986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폭넓은 세원 모델을 택하며 면세 및 영세율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
  - 뉴질랜드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명칭을 ‘Goods and Service Tax’로 정하며 많은 면세조항으로 혼돈스럽고 비효율적인 EU의 부가가치세 모델(VAT model)과 차별화한 바 있음

## 2) 독일에서의 논의

- OECD에서는 2010년 3월 26일 ‘2010 독일 경제서베이(2010 economic survey of Germany)’ 를 발행하며, 경제적 왜곡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에서 각종 혜택을 축소할 것을 권고함
  -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독일의 주요 정책과제는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세원확대 및 재산세 인상조치를 통한 세수증대가 필요함
- 특히, OECD에서는 독일이 경감세율과 같은 부가가치세 특혜 조항에 대해 그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현재 독일에서는 일부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인 19%가 아닌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경감세율 적용 취지 중 하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재화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그러나 해당 가구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집단에 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지적임
  - 또한 케이블카 및 호텔서비스와 같이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이는 일종의 암묵적 보조금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나. 정책반영 사례

- 독일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우체국(Deutsche Post)이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우체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조치를 폐지함으로써 EU 법과 균형을 이루고 기타 우편서비스 제공 법인과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 그리스에서 2010년 3월 24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전문가 그룹(예: 변호사, 민간공증인, 법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폐지되었음
  - 현재 병원 및 의료진단(특수진단 포함) 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으로 면세가 적용되고 있음

## 3. 부가가치세 행정 관련

- 유럽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행정 간소화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최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 유럽국가의 부가가치세 행정 개선 노력

정책구분		사 례
부가가치세 행정의 간소화	장부기장	○ 폴란드의 소규모사업자 범위 일원화 -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과 일원화함 - 캐나다의 GST 회계규정 간소화
	세금계산서 발행	○ 그리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신고·납부	○ 영국의 전자신고·납부제도 도입 ○ 네덜란드의 신고·납부 주기 확대 - 분기별 신고대상자 확대 - 납부주기를 월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변경 ○ 핀란드의 신고주기 확대 - 매출액 규모에 따라 분기별 신고 허용 ○ 스페인의 환급절차 간소화 - 다른 회원국 거주자로부터 매입분에 대해 전자신청을 통한 환급 허용
조세회피 방지	매입세액공제	○ 노르웨이의 현금결제분에 대한 불이익 제공 - 결제금액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제한 - 결제금액에 따라 공급자의 조세채무에 대해 연대책임 부여
	체납	○ 영국의 체납관리 시스템 개선 - 체납자 분석을 통한 징수 - 조정자 프로그램, 체납관리 콜센터 운영 등

## 가. 부가가치세 행정 간소화

### 1) 장부기장 관련

- 폴란드에서는 개인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소규모 납세자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2004 VAT Law) 및 회계법(1994 Accounting Law)상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와 일치 시킴으로써 장부기장을 간소화 함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연간 매출액 상한은 현 80만유로에서 120만유로로 인상함
- 캐나다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거래에 대해 관리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GST 회계규정을 간소화 함
  -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2)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 그리스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3천유로를 초과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하여야 함
  - 이는 법인간의 거래 또는 법인과 공공부문과의 거래에 적용됨
- 또한 지급액이 1,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져야 함

### 3) 신고·납부 관련

#### 가) 전자신고·납부 제도 도입

- 영국에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연간 매출액(VAT 제외)이 £100,000 이상인 기업 및 모든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제도를 도입함
  - 이는 2010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됨

#### 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주기 확대

- 네덜란드,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행정을 간소화하는 일환으로 신고 및 납부주기를 확대하였음
- 네덜란드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기별 신고대상자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주기를 확대함
  -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기별 신고대상자 한도금액을 인상함(7천유로 → 1만 5천유로)
  - 그 결과 약 50,000개의 기업이 월별 신고대상자에서 분기별 신고대상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됨
  - 2009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함
- 핀란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주기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림
  - 2010년 1월 1일부터 연간 총매출액이 25,000유로 이상 50,000유로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함

#### 다) 환급절차 간소화

- 스페인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페인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자신청하는 것을 허용함

### 나. 조세회피 방지

-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 조세회피 방지를 통한 재정건전성의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 매입세액공제 제한

- 노르웨이의 2010예산안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반조세회피 조치(anti-avoidance measures)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음
  - NOK10,000<sup>15)</sup>을 초과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NOK10,000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과세관청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는 서비스 공급자의 조세 채무에 대한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또는 단독으로 부담하게 됨

2) 체납관리 시스템 개선

- 영국의 경우 감사국(National Audit Office)이 지난 2009년 7월 20일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침체로 조세체납액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77억(2009년 3월 31일자)으로 직전연도와 비교하여 £27억 만큼 증가한 수치임
  - 보고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및 미납부자의 수가 증가했으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율도 감소했음
- 영국 국세청(HMRC)은 체납관리의 개선을 위해 체납자를 분석하여 기존 체납실적, 위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한 징수를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조정자 프로그램(Pacesetter Program)을 통해 체납관리 능력을 신장시켜 징세 활동을 추진하고 체납관리 콜센터를 확장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의 핵심 체납관리 시스템하에 운영할 예정임

15) 이는 2009년 11월 5일자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로 평가했을 때 2,081,000원임.



I

미국 / 캐나다



## I 미국 / 캐나다

### 1. 미국

#### 가. 미국의 2009 조세감면연장법안(Tax Extenders Act of 2009)

[조세동향 10-01]

- 美 연방하원이 총 310억달러 규모의 '2009 조세감면연장법안(Tax Extenders Act of 2009)'을 12월 9일 통과시킴
  - 이번 조치로 R&D공제를 포함해 2009년 말로 만료 예정이던 40여 개의 조세감면조항이 1년간 연장됨
  - 동 법안에는 향후 10년간 개인에 대한 50억달러의 조세감면과 기업에 대한 170억달러의 조세감면이 포함되어 있음
  - 이 밖에도 기부행위 장려 및 지역사회의 개발 촉진, 특별재난지역의 구호, 친환경차와 대체연료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70억달러 규모의 조세감면프로그램을 1년간 연장하여 실시기로 함
  
- 조세감면 규모가 가장 큰 조항은 첨단기술기업 및 제약업체에 관한 연구공제(research credit)로 총 70억달러임
  - 그 다음은 식당 및 소매점, 적격 임차인의 개량비에 대해 15년간 정액상각을 허용한 조세감면 조항으로 감면규모는 54억달러임

〈표〉 일몰기간 연장 법안

(단위 : 억달러)

구분	주요 내용	세수효과 <sup>1)</sup>
I. 전통적인 조세감면 조항	A. 개인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	
	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에 대한 공제조항의 연장	18.46
	②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에 대한 추가적인 표준공제 조항의 연장	14.60
	③ 적격 수업료 및 관련 경비에 대한 조정전공제(above-the-line deduction) 조항의 연장	15.29
	④ 초·중등교사의 특정 경비에 대한 조정전공제(above-the-line deduction) 조항의 연장	2.28
	B.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	
	① R&D공제 조항의 연장	69.66
	② Active financing을 Subpart F(CFC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의 연장	39.23
	③ 특수관계가 있는 피지배 외국법인 간의 지급금에 대한 투시조항(look-through treatment)의 연장	5.74
	④ 적격 임차개량자산 및 식당건물, 소매점의 개량비에 대한 15년간의 정액상각조항의 연장	53.90
	⑤ 모터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경기장에 대한 7년간의 정액상각 조항의 연장	0.45
	⑥ 철도유지비공제 조항(railroad track maintenance credit)의 연장	1.65
	⑦ U.S.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물에 대한 손비인정특례 조항의 연장	0.51
	⑧ 재개발용 환경복구비에 대한 손비인정특례 조항의 연장	1.59
	⑨ 광산구조팀의 훈련비공제 조항의 연장	0.01
	⑩ 첨단광산안전장비에 대한 특별상각 선택 조항의 연장	0.05
	⑪ 재향군인에 대한 고용주임금공제 조항의 연장	0.04
	⑫ 농업용 기계장치 및 장비에 대한 5년간 상각 조항의 연장	-
	⑬ 규제대상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에 대한 특례 조항의 연장	0.94
	⑭ 한계 유정(油井)에 대한 감모상각특례조항의 연장	1.04
	C. 기부금공제	
	① 보존 목적의 부동산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기부금공제 조항의 연장	1.82

구분	주요 내용	세수효과 <sup>1)</sup>
	② 식료품 재고 기부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기부금공제 조항의 연장	0.78
	③ 공공학교에 대한 서적 재고 기부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기부금공제 조항의 연장	0.31
	④ 교육 목적의 컴퓨터장비의 법인 기부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기부금공제 조항의 연장	1.95
	⑤ 납세자 1인당 \$100,000까지 개인퇴직계좌에서 면세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5.91
	⑥ 면세단체가 등록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임대료·사용료·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0.2
	⑦ 특정한 재개발용 부지의 매각 또는 교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수익사업에서 배제하는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0.47
	⑧ 재산을 기부하는 S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0.37
	D. 기타 조항  인디언고용공제 조항의 연장 등	5.05
II. 지역사회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조항	① 자치지구(Empowerment Zone)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3.81
	② 지역사회 회복 프로그램(Renewal Communities)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7.86
	③ 신규시장(new market)세금공제 조항의 연장	14.02
	④ 콜롬비아 특별구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0.17
	⑤ 뉴욕 자유지역(New York Liberty Zone)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3.18
	⑥ 카트리나 허리케인 피해지역의 종업원에 대한 일자리세액공제 조항의 연장	0.07
	⑦ 걸프 폭풍 피해지역(Gulf Opportunity Zone)의 역사적 구조물의 복구비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는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0.25
	⑧ 州주택기구(state housing agencies)가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대신에 동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4.71
III. 특별재난지역의 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조항	①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대한 우발손실공제의 확대 및 강화 조항의 연장	7.28
	② 적격 재난경비에 대한 소비인정특례 조항의 연장	0.32

구분	주요 내용	세수효과 <sup>1)</sup>
	③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특정 손실에 대해 5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한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1.29
	④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대한 주택채권(mortgage revenue bond)의 제한 완화조치 연장	0.63
	⑤ 적격 재난재산에 대한 추가상각 조항의 연장	14.34
	⑥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경비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의 손비인정특례 조항의 연장	상기 추정액에 포함
IV. 친환경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조항	① 바이오디젤 및 재생 디젤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10.08
	② 중형 하이브리드에 대한 대체자동차공제 조항의 연장	0.07
	③ 운송수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및 프로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1.25
	④ 전자변속기의 판매에 관한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

주: 1) 10년간 추정치

자료: House of Representatives; Ways and Means Committee

- 한편 동 법안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적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수조달 방안을 제시함
  - 역외계좌신고의무를 강화할 포함해 역외 탈세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77억달러의 세수를 조달함
  - 펀드매니저가 받는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자본이득이 아닌 통상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246억달러의 세수를 조달함<sup>16)</sup>

## 나. 오바마 대통령의 고용촉진법안 및 은행세 부과 제안

[조세동향 10-03]

### 〈고용촉진법안〉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감면법안을 제안함
  - 이는 2010년 국정운영의 목표가 건강보험 개혁에서 고용창출과 긴축재정으로 옮겨 갔음을 의미함

16)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자본이득에 비해 고율의 소득세율이 적용됨.

- 새로운 조세감면법안에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임금을 인상한 소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약 100만개의 소사업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약 330억달러의 조세지출이 예상됨
- 백악관이 밝힌 구체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2010년의 순수한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1인당 5천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 그러나 두 가지 세액공제의 합계는 고용주 1인당 50만달러로 제한됨
  - 한편 창업기업은 세액공제금액의 절반만 공제가 가능하며, 조세납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둘 예정임
  -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부인하며, 재창업 후 새로운 이름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은행세 부과〉

- 오바마 대통령은 1월 14일, 긴급구제금융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대형은행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업계의 잇따른 대규모 보너스 지급 움직임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위기책임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이하 ‘은행세’)”를 거두겠다고 밝힘
- 은행세는 2008년 금융위기시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공적자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 목적의 자산 보유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은행세는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6월 30일 이후 시행됨

- 백악관이 밝힌 은행세 부과방안에 따르면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은 부채의 0.15%에 해당하는 은행세를 납부해야 함
  - 은행세의 과세대상은 자산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인 유가증권 중개기관이나 부모예금기관, 은행, 저축은행지주회사, 연방예금공사가 보증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임
  - 은행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은 약 50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 35개는 미국회사이고, 10~15개는 외국법인의 미국 내 자회사임
  - 은행세는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또는 기타의 긴급안정화조치를 통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 은행세의 과세표준은 은행의 총자산에서 투기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안전자산(즉, Tier 1 자본금과 연방예금공사가 보증한 예금 등)을 차감해 계산함
  
-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2월 중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 은행세는 2010년 6월 30일부터 10년간(단, TARP의 원금상환일이 이보다 늦은 경우에는 원금상환일까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는 향후 10년간 약 900억달러로 추산됨
  - 은행세 부과로 조달된 세수는 TARP로부터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계획임

#### 다. 미국의 2011년 예산안

[조세동향 10-04]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2월 1일 3조 8,340억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함
  - 예산안에서는 2010~2020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재정계획을 제시함
  -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재정건전화와 일자리 창출에 국정능력을 집중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약 1조 2,670억달러의 적자예산 편성(GDP 대비 8.3%)

〈표 1〉 미국의 예산추이

(단위: 십억달러, %)

회계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1 ~ 2020
예산총액													
세입	2,105	2,165	2,567	2,926	3,188	3,455	3,634	3,887	4,094	4,299	4,507	4,710	37,268
세출	3,518	3,721	3,834	3,755	3,915	4,161	4,386	4,665	4,872	5,084	5,415	5,713	45,800
재정적자	1,413	1,556	1,267	829	727	706	752	778	778	785	908	1,003	8,532
GDP 대비													
세입	14.8	14.8	16.8	18.1	18.6	19.0	18.9	19.3	19.4	19.5	19.5	19.6	18.9
세출	24.7	25.4	25.1	23.2	22.8	22.9	22.9	23.1	23.1	23.0	23.5	23.7	23.3
재정적자	9.9	10.6	8.3	5.1	4.2	3.9	3.9	3.9	3.7	3.6	3.9	4.2	4.5

자료: [www.whitehouse.gov/omb/budget/fy2011/assets/tables.pdf](http://www.whitehouse.gov/omb/budget/fy2011/assets/tables.pdf) 참조

□ 조세분야 주요 내용

- 증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취하고, 대형 금융기관에 은행세를 부과하며, 부유층에 대해서는 증세하는 방안들을 마련함
  - 2010년 12월로 만료되는 2001, 2003년 감세법을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증산층 가정에 대해서는 영구화하고, 2009년 수준으로 Alternative minimum tax(AMT) 공제 한도를 지속하되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도록 AMT를 운영함
  -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 은행세를 부과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독신 20만달러)의 소득자에 대해 2001년, 2003년 감세법을 종료함
  - 체납된 세금을 감소하기 위해 행정적인 노력을 하는 방안이 포함됨

□ 부유층에 대한 증세

- 20만달러(부부합산 신고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한계세율을 인상함

- 소득세 한계세율 인상: 현재의 6단계 누진세율 체계<sup>17)</sup> 중 33%와 35%의 세율 대신 36%와 39.6%의 세율을 적용
  - 부시정부 2001 감세법안(EGTRRA) 이전 상태로 회귀
- 20만달러(부부합산 신고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장기자본이득과 배당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
- 고소득자에 대한 장기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한 세율을 현행의 15%에서 20%로 인상함
  -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규정을 폐지함
- 20만달러(부부합산 신고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항목별 공제 제한규정 및 인적공제 삭감 규정을 재도입
- 39.6%와 36% 과세구간이 적용되는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에 적용되는 세율을 28%로 제한함

17) 소득세 세율(2009-2010)

(단위 : 달러, %)

부부합산신고		단독	
과세표준 구간	한계세율	과세표준 구간	한계세율
16,700 이하	10	8,375 이하	10
16,701 ~ 68,000	15	8,376 ~ 34,000	15
68,001 ~ 137,300	25	34,001 ~ 82,400	25
137,301 ~ 209,250	28	82,401 ~ 171,850	28
209,251 ~ 373,650	33	171,851 ~ 373,650	33
373,650 초과	35	373,650 초과	35

자료: IBFD 참조

〈표 2〉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한 세입증가 효과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1 ~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대한 36%와 39.6%의 세율 원상복구 및 28% 세율의 확대</li> </ul>	-	14,509	26,217	29,295	32,556	35,676	38,809	41,960	45,135	48,399	51,883	364,4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대한 인적공제 삭감 규정 및 특별 공제 한도 원상복구</li> </ul>	-	6,840	14,925	17,119	18,991	20,808	22,571	24,324	26,054	27,687	29,170	208,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해 20%의 세율 부과</li> </ul>	1,344	12,165	-263	3,315	8,230	11,372	12,370	13,288	14,162	14,973	15,752	105,3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별 공제의 적용 세율을 28%로 제한</li> </ul>		7,896	21,582	24,500	27,019	29,351	31,570	33,938	36,268	38,426	40,625	291,175
소 계	1,344	41,410	62,461	74,229	86,796	97,207	105,320	113,510	121,619	129,485	137,430	969,467

자료: [www.whitehouse.gov/omb/budget/fy2011/assets/tables.pdf](http://www.whitehouse.gov/omb/budget/fy2011/assets/tables.pdf) 참조

□ 법인의 세부담 증가

- 석유 및 가스회사에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 폐지, Superfund<sup>18)</sup>과세,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강화, LIFO 및 저가법의 회계처리 폐지, 상증세 평가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증대 효과 기대
- 대형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세를 채택함
  - 총자산이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은행, 저축은행, 은행 및 저축은행의 지주회사, 중개인, 증권매매업자는 미국 금융회사의 전 세계 부채의 0.1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 금융위기세 등을 통해서 933억달러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 기대
- 국제조세 분야에서 조세회피 방지 노력 강화, 기타 세제개혁 정책 시행으로 1,222억달러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 기대

〈표 3〉 법인관련 조치들의 세입증가 효과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1 - 2020
• 국제조세 분야에서 과세 강화 및 기타의 조세개혁 정책 실행	246	6,869	11,878	12,707	13,226	13,223	13,601	14,105	12,726	11,812	12,042	122,189
• 금융기관 관련 추가과세	52	8,189	8,256	9,277	9,300	9,323	9,344	9,365	9,386	10,409	10,433	93,282
• LIFO 폐지	-	-	2,667	6,007	7,070	7,120	7,162	7,224	7,207	7,278	7,350	59,085
•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 폐지	10	2,754	4,323	4,059	4,013	4,038	3,970	3,843	3,837	3,937	4,045	38,819
• 셀룰로이드 바이오연료 제품에 대한 공제를 개정	784	6,569	8,058	4,901	2,659	1,491	309	-	-	-	-	23,987
•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자	-	1,452	3,289	3,914	3,741	3,176	2,534	1,975	1,530	1,355	1,011	23,977

18) 공해방지사업을 위한 대형 자금 마련을 위해 석유회사 등에 부과하던 세금으로 1995년 폐지되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다시 부과할 것을 제안함.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1 - 2020
• 상속세의 평가 규정을 개정	40	816	1,630	1,806	2,023	2,253	2,496	2,753	3,025	3,312	3,615	23,729
• Superfund tax 부활	-	1,203	1,608	1,729	1,837	1,921	1,995	2,068	2,129	2,196	2,239	18,925
• 보험기관 관련 추가과세	-	196	558	713	868	1,076	1,368	1,690	2,143	2,639	3,162	14,413
• 실업보험에 대한 영구적인 누진세율의 적용	-	-	1,458	1,501	1,539	1,571	1,596	1,616	1,631	1,642	1,642	14,196
• tax gap의 감소를 위한 조치	-	326	1,029	1,217	1,359	1,441	1,526	1,604	1,681	1,765	1,852	13,800
• 저가법 폐지	-	-	286	1,423	2,045	1,402	1,127	283	296	309	323	7,494
• 법인에 대한 신고를 강화	-	11	214	543	688	766	848	933	1,020	1,112	1,208	7,343
• 경제적인 실질에 의한 과세 강화	1	29	87	168	285	380	491	608	699	775	857	4,379
• 조직재편성으로 받은 배당에 대한 이득 제한규정을 폐지	-	46	77	78	78	81	83	85	86	86	88	788
• 선수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제한	-	120	72	70	69	68	69	69	72	74	77	760
• 상당한 손실에 대한 공제의 제한	-	-	22	32	33	34	35	36	38	38	39	307
• 가산세의 확대	-	1	2	2	2	4	4	4	5	6	6	36
소계	1,133	28,585	45,520	50,153	50,842	49,375	48,565	48,269	47,519	48,754	49,998	467,580

자료: [www.whitehouse.gov/omb/budget/fy2011/assets/tables.pdf](http://www.whitehouse.gov/omb/budget/fy2011/assets/tables.pdf) 참조하여 재구성

□ 감세정책

-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2년간의 근로연계세액공제(Making Work Pay Credit)를 2011년까지 연장함
  - 근로소득 중 6.2%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400달러(부부합산신고 800달러) 한도 이내에서 환급함
  - 근로소득 중 6,452달러(부부합산신고 12,903달러)를 공제하며 75,000달러(부부합산신고 150,000달러)를 초과하면 조정후총소득(AGI)의 2%씩 단계적으로 공제금액을 삭감함
- 경기부양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및 자녀·피부양자 돌봄비용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를 확대함
  - EITC 확대: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 EITC를 영구화하고, 공제금액과 공제금액 삭감이 시작되는 소득금액을 인상함
  - 자녀·피부양자 돌봄비용 세액공제 확대: 동 공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되는 구조인데, 기존에는 세액공제비율이 조정후총소득(AGI) 15,000달러를 넘게 되면 초과소득 2,000달러당 1%씩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그 기준금액을 85,000달러로 증가시킴
-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s는 고등교육비에 대한 공제로 Hope Scholarship Credit를 대체하여 규정을 영구화하고,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공제금액을 조정함
- 저축자세액공제(savers' credit)의 대상자 및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도 저축자세액공제의 환급을 허용함
  -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조정후총소득(AGI)이 27,750달러(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55,500달러),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41,625달러였으나, 이를 각각 32,500달러(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65,000달러), 48,750달러로 인상함
- 2009년 2월 17일 이후 취득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식을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고, 연구 및 시험세액공제규정을 영구화함

〈표 4〉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인한 세입감소 효과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1 - 2020
<b>가주 및 개인에 대한 세금감면</b>												
• Making work pay Credit 연장	-	30,132	31,075	-	-	-	-	-	-	-	-	61,207
• EITC 확대	-	85	1,674	1,645	1,636	1,628	1,639	1,663	1,692	1,730	1,766	15,158
•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의 확대	-	377	1,345	1,359	1,368	1,373	1,377	1,374	1,365	1,354	1,349	12,641
• savers' credit 확대 및 IRA 및 401(k)에의 자동가입	-	323	3,189	3,821	3,905	4,091	4,308	4,584	4,913	5,320	1,801	40,165
• 고등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	951	6,875	7,444	7,815	8,400	8,841	8,632	8,738	8,870	8,907	75,473
<b>소계</b>	-	31,868	44,158	14,269	14,724	15,492	16,165	16,253	16,708	17,274	17,733	204,644
<b>기업에 대한 세금감면</b>												
• 소규모 사업 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폐지	-	-	-	-	55	280	731	1,217	1,591	1,933	2,248	8,055
• 연구 및 시험 세액공제 영구화	3,044	5,346	5,969	6,622	7,286	7,945	8,597	9,244	9,887	10,530	11,182	82,608
• 휴대폰의 비용공제 제한을 폐지	69	277	226	238	248	266	281	296	314	332	348	2,826
<b>소계</b>	3,113	5,623	6,195	6,860	7,589	8,491	9,609	10,757	11,792	12,795	13,778	93,489

자료: [www.whitehouse.gov/omb/budget/fy2011/assets/tables.pdf](http://www.whitehouse.gov/omb/budget/fy2011/assets/tables.pdf) 참조

## 라. 미국의 고용지원법안 승인

[조세동향 10-05]

- 미국 상원은 2월 24일에 155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법안을 승인함
  - 2009년 12월에 하원이 1,500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비교하면 상원에서 통과시킨 지원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임
    -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를 고용지원법안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상원에서 통과시킨 고용지원법안의 내용은 하원에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하원은 통과 여부만을 표결에 부칠 수 있음
  
- 상원에서 통과된 155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법안 중 세법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 60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해에 지불해야 하는 6.2%의 사회보장근로세를 면제함
    - 1년 이상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1,000달러의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함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30억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 장비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 장비에 대한 즉시 비용화를 인정함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0.35억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 마. 미국의 고용지원법안(HIRE Act) 서명·발효

[조세동향 10-08]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3월 18일에 2010 고용지원법안(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발효됨

#### □ 고용지원법안의 주요 내용

- H.R. 2847조 관련
  - 사회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payroll taxes)의 고용주 부담분(6.2%)을 면제함
    - 2010년 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함
    - 기존 근로자에 대한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어야 함
  - 신규채용을 한 사업체에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함
    - 채용했던 근로자가 52주 동안 급여대상자 명단에 남아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체에 2011년에 근로자 1인당 \$1000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H.R. 179조 관련
  - H.R. 179조는 사업체의 총지출액이 \$8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자본지출에 대하여 \$250,000까지 즉시 비용화를 허용함
    - 향후 \$800,000의 기준은 하향 조정될 예정임
- H.R. 3933조 관련
  - 이 조항은 2009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of 2009)의 내용을 개정 보완한 것으로 역외계좌신고(FBAR)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sup>19)</sup>

#### □ 역외계좌신고 관련 주요 개정(H.R. 3933조)

- 미국은 2009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of 2009)를 제정하여 “외국은행이 미국의 자본시장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외국은행은 미국의 소유주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모토하에, 미국인에게 해외계좌를 제공하는 외국금융기관으로 하여금 IRS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
- 2009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of 2009)는 역외계좌신고(FBAR)의 시행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조치임

19) FATCA(Foreign Accounts Tax Compliance Act)는 2009년 10월 27일에 상하원에서 동시에 도입(H.R.3933, S.1934)하였고, 2010년 2월 24일에 상원에서 통과된 HIRE(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에 FATCA가 좀 더 개선된 형태로 포함되었음.

□ 역외계좌신고 관련 주요 개정사항

- IRS에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
  - 외국은행·신탁
    -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미국인계좌, 계좌의 소유주, 소유자산
    - 외국신탁의 미국 수익적 소유자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분명히 함
      - : 외국신탁의 미국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인인 현재, 미래, 우발적 수익소유자를 포함함을 재무성 규칙(Treasury regulations)으로 명확히 함
      - :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면, 미국 수익적 소유자로 가정함
      - : 2012년 12월 31일 이후 지급분부터 유효함
  - 미국인 1인당 지분율이 10% 이상인 외국법인
    -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미국인의 성명, 주소, 미국인의 수
  - 이런 의무를 위반할 시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함
  - 정보제공 대상 확대의 의미
    - 예전에는 Non-QI(Qualified Intermediary)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Non-QI의 미국 지급액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하였으나, QI(Qualified Intermediary)의 경우에도 개별정보(예를 들면 개별 미국인 계좌정보 등)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Non-QI와 동일하게 30%의 원천세율로 과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 QI(Qualified Intermediary)가 미국인에 대한 개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집약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함
    - 미국인이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회사에 대해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여
      - : 개정 전에는 개인이 해외에 명목상의 회사(shell company)를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나,
      - : 개정 후에는 개인이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해외법인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차단하고자 함
- 신고대상자산의 특징에 따른 차이를 반영함
  - \$50,000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여

- 역외계좌에 \$50,000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가 과세소득 신고시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에는 \$50,000 이하의 가산세를 부과함
- 실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유효함
- 미신고된 자산의 저평가액에 대한 가산세
  - 신고되지 않은 외국자산에 대하여 저평가된 금액이 있는 경우 저평가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 해외자산과 관련된 신고가 상당히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
  -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에서 6년까지로 연장함
  - 상당한 과소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과소신고가 \$5,000를 초과하면서 총이익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함
- 무기명채권(bearer bond)에 대한 제재를 연장함
  - 무기명채권이 미국거주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명채권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유통되는 무기명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한편, 무기명채권의 발행자 및 투자자에 대하여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금지 등 세제상의 제재를 하고 있음
  - 무기명채권에 대한 제재를 이 법 실행일 이후 2년간 연장함
- 기타
  - 금융회사의 수익에 대한 신고가 연간 250건보다 적은 경우라도 원천징수세에 대한 전자신고를 의무화함
  -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의 개별 주주도 PFIC로부터 받은 분배금이나 이자, 주식의 양도차익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함

〈참고자료〉

- 역외계좌신고(FBAR)가 납세자 개인이 신고를 하는 방식이라면 QI제도는 제3자를 통하여 납세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을 파악하는 방식임
- QI(Qualified Intermediary)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현재 약 5,500개의 QI가 활동하고 있음
  - QI제도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고, 미국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역외소득에 대한 신고가 달라짐
  - 비거주자의 미국 내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해당 비거주자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원천징수대리인에서 QI로 이전됨
  - 거주자의 입장에서 역외의 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아 세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소득까지 전부 드러나게 됨
- QI와 Non-QI의 차이
  - QI는 IRS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객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 기존 QI제도의 문제점
    -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면서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별로 집계된 총액만을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개별 개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피할 수 있음
    - 미국인이 외국법인으로 가장하여 그 신원을 IRS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음
    -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외국금융기관과 IRS 간의 약정은 각 외국금융기관이 속한 국가의 은행비밀보장법(bank security law)과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QI는 미국 증권과 미국원천으로 보고 가능한 지급액을 발생시키는 증권이나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2. 캐나다

### 가. 캐나다(경기부양 목표의) 2010 예산안

[조세동향 10-06]

- 재무성이 2010년 3월 4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Canada's Economic Action Plan(CEAP)의 2차년도인 2010-11년에 경기 부양을 위하여 CAD190억의 재정지출을 실시할 계획임
  - 재정지출의 구성을 보면, 소득세 감면에 CAD32억, 실업자 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CAD40억, 기반시설 현대화 및 주택 개선에 CAD77억, 미래 경제의 창출에 CAD19억, 산업 및 지역사회 지원에 CAD22억이 할당

〈표 1〉 Canada's Economic Action Plan에 의한 재정지출 규모

(단위: 백만CAD)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2009-10	2010-11	
세부담 감소	3,020	3,180	6,200
실업자 대책 및 일자리 창출	2,852	4,167	7,019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8,312	7,696	16,007
미래 경제의 창출	2,139	1,880	4,018
산업 및 지역사회 지원	11,768	2,231	13,998
Economic Action Plan에 의한 재정지출 합계	28,090	19,152	47,242

자료: 캐나다 재무성, Budget 2010 Leading the Way on Jobs and Growth, 2010. 3. 4. p. 67

- 2010-11 예산안에는 세계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일부 개정사항이 제시되어 있음

□ 개인소득과세

- 양육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Benefit 분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양자녀에 대해 적절한 1인만이 Canada Child Tax Benefit과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받을 수 있음
    - 예산안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모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2인이 Benefit을 분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 6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CAD100의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지급하고 있음
    - 현재,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두 명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에 지급받은 Benefit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편부모가정(single parent)의 경우 한 명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므로,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경우에 비해 편부모가정이 과세상 불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안에서는 편부모가정의 경우 Benefit 금액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거나 부양자(dependant)의 소득에 포함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성형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장학금 과세면제 대상의 명확화
    - 중등과정 이후(post-secondary) 학생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학금, 연구비, 학비보조금에 대한 과세면제가 2006년 도입되었음
    - 예산안에서는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2년제 과정(diploma),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을 위한 장학금은 과세 면제임을 확실히 함에 따라 박사 이후 과정의 연구비는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임
    - 장학금 과세면제 금액은 적절한 교육과정의 등록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제한함
  - 자선단체의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 개정
    -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선단체는 매년 다음 ①, ②의 합계액을 자선활동에 지출하여야 함
- ① 기부금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자선단체 간에 이전된 금액을 합한 금액의 80%

- ② 자선프로그램 및 관리에 사용되지 않는 CAD25,000을 초과하는 모든 자산의 3.5%
  - 이번 예산안에서는 ①의 요건(Charitable Expenditure Rule)은 폐지하고 ②의 요건에서 기준금액을 CAD100,000으로 인상함
  - 종업원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 기존에는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행사가의 차이는 종업원 급여(employment benefit)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됨
    - 과세대상 급여액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종업원 단계에서 과세대상 급여액의 50%를 stock option deduction으로 공제할 수 있고 고용주 단계에서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주식 대신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고용주도 100% 공제할 수 있고 종업원도 50%의 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예산안에서는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주식으로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종업원 단계에서만 50% 공제를 허용하고,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100% 공제하는 대신 종업원은 100%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표 2〉 스톡옵션에 의한 종업원 급여의 과세처리

	고용주 단계	종업원 단계
Employee stock option plans	비공제	50% 공제
Stock option cash outs		
현행	전액 공제	50% 공제
개정안(선택권 없는 경우)	전액 공제	전액 과세소득
개정안(선택권 있는 경우)	비공제	50% 공제

자료: 캐나다 재무성, Budget 2010 Leading the Way on Jobs and Growth, 2010. 3. 4. p. 355

□ 사업소득 과세

-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제도에 의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이용 및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연료의 사용 등 청정에너지생산설비 및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서는 50% 가속상각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비용공제 대상에 다음의

설비를 추가함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열회수설비(heat recovery equipment), 지역에너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공급설비(distribution equipment)

□ 국제조세

-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 대상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에 의해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자가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과세대상인 자산의 범위에서 다음 자산을 제외하였음
- 법인의 주식,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기타 지분, 캐나다의 자원, 산림자원

II

유 럽



## II 유럽

### 1. 프랑스

#### 가.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 환경부문 추가

[조세동향 10-01]

-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에서는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탄소세의 도입<sup>20)</sup> 외에 여러 조세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
  - 저에너지소비 건물(low energy consumption building)<sup>21)</sup>에 대해 다음의 세제혜택을 도입함
    - 저에너지소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에 대해 취득가액의 25%(2010년), 20%(2011년, 2012년)를 9년에 걸쳐 균일하게 안분하여 세액공제함
    - 저에너지소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첫 12개월 동안은 대출자의 40%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자의 20%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부가가치세(VAT)
  - 에어컨에 적용되는 5.5%의 저세율을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함<sup>22)</sup>
- 소비세(excise taxes)
  - 연료소비세를 행정지역별로 차별화함

20) 2010 재정법안에서 탄소세 도입 관련 내용은 '동향 09-19' 를 참조할 것.

21) 프랑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2013년부터 건물 건축시 저에너지소비 요건(BBC standard)을 의무화할 예정임.

22)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9.6%가 적용되고 있음.

- 지방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디젤은 EUR1.35/hectolitre, 가솔린은 EUR0.73/hectolitre를 한도로 부과토록 함
- 관련 세수는 교통수단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사용될 계획임

## 나.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 승인

[조세동향 10-04]

- 프랑스 의회는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을 2009년 12월 18일에 통과시키고 2009년 12월 30일에 공포함
-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VAT)
  - B2B 서비스 공급의 경우, 과세장소(place of taxation)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로 바뀜
  - 다만, B2C 서비스 공급의 경우 과세장소는 여전히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임
  - 운송수단의 장기 리스의 경우, 과세장소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로 바뀜
  - 다만, 운송수단의 단기 리스의 경우, 과세장소는 운송수단이 실제로 리스된 장소임
  - on-road 차량 장기 리스 기간 : 30일 초과
  - 그 밖의 운송수단의 장기 리스 기간 : 90일 초과
  -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B2B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장소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로 바뀜
  - 다만, B2B를 제외한 공급방식은 여전히 이러한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장소가 과세장소임

- 전자,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서비스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B2C로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장소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있는 장소임

□ 법인세

- 외국의 투자법인이 투자한 프랑스의 피투자법인도 연결자법인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연결모법인은 외국의 투자법인 주식을 95% 이상 소유하여야 하고, 외국의 투자법인은 프랑스의 피투자법인 주식을 95% 이상 소유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의 투자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야 하며, EU 또는 EEA 안에 위치하여야 함
- 2009년에 종료 예정이던 R&D 세액공제의 즉시 환급 등에 대한 혜택을 연장

□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ation)

- 저에너지소비 건물(low energy consumption building)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인하
  - 현행 제도 : 저에너지소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첫 12개월 동안은 대출이자의 40%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20%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개정 제도
    - 2010년에 취득하거나 건축된 거주주택의 경우 대출이자의 30%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15%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2011년에 취득하거나 건축된 거주주택의 경우 대출이자의 25%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10%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2012년에 취득하거나 건축된 거주주택의 경우 대출이자의 15%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5%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조세감면 등으로 인한 혜택의 총액한도를 낮춤
  - 현행 제도 : 25,000유로 + 과세소득의 10%
  - 개정 제도 : 20,000유로 + 과세소득의 8%
- 2011년 이후 직접세 징수한도제도(tax shield)상 소득계산에 배당 등을 포함
  - 직접세 징수한도제도(tax shield)는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이 납세자 소득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 개정 제도 : 2011년부터 납세자의 소득계산에 배당, 통상손실(loss) 및 증권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손실(capital loss)에 관한 조세감면액(tax relief)을 포함
- 자발적 퇴직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부 감면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

□ 인지세(stamp duty)

- 비거주자인 주주가 프랑스 밖에서 프랑스 부동산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도 5%의 인지세(stamp duty)를 부담하도록 함

**다. 프랑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

[조세동향 10-05]

□ 프랑스는 2010년 2월 17일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공개하였음

-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는 3차 수정 재정법(3차 수정 Finance bill 2009)에 포함되어 있음
- 블랙리스트에는 다음의 18개 비협조적인 국가나 지역이 특정됨
  - Anguilla; Belize; Brunei; Costa Rica; Dominique; Grenada; Guatemala; the Cook Islands; the Marshall Islands; Liberia; Montserrat; Nauru; Niue; Panama; the Philippines;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조세피난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 EU 회원국이 아님
  -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하여 OECD의 조사에 따라야 함
  - 프랑스와 체결된 상호행정지원협정(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greement)이 없어야 함
  - 타 국가나 지역과 체결된 상호행정지원협정의 수가 12개보다 적음

- 조세피난처에 포함될 경우 과세를 더욱 엄중히 적용함
  - 특정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최고 50%)함
  - 주식의 장기 자본이득에 관한 세제의 적용배제
  - 특정 비용(이자, 사용료, 기타 서비스비용)에 대한 손금부인 등

## 라. 프랑스의 2009년도 Bonus tax 도입

[조세동향 10-08]

- 프랑스는 2010 재정법(2010 Finance Act)을 일부 개정하여 2009년 소득에 한하여 Bonus tax를 도입하기로 확정함
  - Bonus tax : 특정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수(remuneration)에 5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관련된 조세수입 예상액은 약 3.625억유로임
- Bonus tax 납세의무자는 다음 금융기관임
  - 특정한 금융기관은 금융재정법 등에 의해서 규정된 신용기관과 투자는행이 포함되며, 외국 과세주체의 프랑스 내 사업장도 특정한 금융기관에 포함됨
  - 그러나 보험회사와 자산운용 회사는 Bonus tax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한 금융기관에서 제외함
- Bonus tax 적용대상 소득
  - 적용대상 소득 : 다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수(remuneration) 중 성과 등에 연동하여 변동하는 부분(variable portion)
    - 활동이 금융기관을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금융시장 전문가
    -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금융시장 전문가
  - 다만 다음의 종업원에 지급하는 보수는 적용대상이 아님
    - 지원부서(back office)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 회계 서비스나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middle office)의 종업원

- 소득금액 계산(basis for bonus tax)
  - Bonus tax 과세대상 소득인 보수 중에서 종업원의 개별적, 집합적 성과 등에 연동하여 변동하는 부분은 종업원 부담 사회보험기여금을 포함하나, 사용자(employer) 부담 사회보험기여금의 경우 포함 여부가 불분명
  - 성과 등에 연동하여 변동하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지불수단을 포함함
    - 현금, 주식, 스톡옵션, 및 유리한 조건에서의 주식매수권
    - 이때, 주식 및 스톡옵션의 평가는 IFRS를 적용하는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계산한 공정가치에 기초함
  
- 세율 및 세액
  - Bonus tax 세율 : 50%
  - 과세대상 종업원당 세액계산 : (보수 중에서 종업원의 개별적, 집합적 성과 등에 연동하여 변동하는 부분 - 27,500유로) × 50%
  
- 기타
  - Bonus tax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 가능
  - 주식, 스톡옵션 부여일(vested date) 이후 실제로 취득하거나 실행한 금액이 bonus tax 과세소득시보다 낮을 경우에도 기납부한 bonus tax에 대한 조정이나 환급을 할 수 없음

## 2. 영국

### 가. 영국 Tax Health Plan

[조세동향 10-02]

- 영국 국세청(HMRC)은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탈루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Tax Health Plan)를 발표함

□ Tax Health Plan 상세

- 주 내용은 의료전문가가 기한 내에 특정 기간의 탈루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 준다는 것임
- 신고대상 소득
  - 2008년 4월 5일까지 기간 동안 탈루한 소득이 신고대상 소득에 해당함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할 의사가 있음을 국세청에 통지하여야 함
  - 또한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탈루소득을 신고하고 미납부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
-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하며, 미납부세액이 GBP1,000 미만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함
- 미신고시 제재
  - 동 제도에 따라 탈루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전문가에 대해서는 10%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함<sup>23)</sup>
  - 대개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나 특정의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음

나. 영국 기업과세 관련 조세체계안

[조세동향 10-05]

- 정부는 2010년 2월 22일 2010-11 예산(Budget for 2010-11) 수립을 앞두고 기업의 조세안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업과세 관련 조세체계안(draft Tax Framework for Business)을 발행함
- 이에는 경쟁력, 공정성, 왜곡의 최소화, 단순성, 안정성 및 확실성, 조세행정/납세협력비용 등 여섯 가지 조세원칙이 담겨 있음

23) 참고로, 영국에서 가산세액은 체납자의 제안 및 국세청의 수락 여부에 따라 결정됨. 국세청은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중대성, 체납자의 협조 등에 기초하여 체납자가 제안한 가산세액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함. 국세청은 미신고세액에 대해 100%까지 가산세를 매길 수 있으며, 특정 경우 가산세액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함.

□ 기업과세 관련 조세원칙

- 경쟁력(Competitiveness)
  - 조세제도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영국이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 공정성(Fairness)
  - 조세제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간에 공정성이 보장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공정한 세부담액을 납부하도록 함
- 왜곡의 최소화(Minimizing distortion)
  - 조세제도가 영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시장실패 문제를 다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이 조세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조세제도를 유지해야 함
- 단순성(Simplicity)
  - 기업관련 세제정책을 개발하거나 검토할 때, 조세정책의 다른 목적들과 더불어서 단순성도 고려하여야 함. 이를 통해 새로이 기업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설계하거나 개발할 때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해야 함
- 안정성 및 확실성(Stability and certainty)
  - 안정성과 확실성이 기업에 주는 가치를 인식하여 세법규정의 불필요한 개정을 피해야 함
  -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개정이 필요한 정책적 이유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세법규정이 이와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설명해야 함
- 조세행정/납세협력비용(Tax administration/Compliance costs)
  - 정부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함과 동시에,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와 균형을 이뤄야 함

□ 기업관련 과세정책의 수립 및 개정시 정부는 상기 여섯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양해야 함

- 개별 원칙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결정하며 각 원칙 간에

- 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 한편 개별 원칙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함

#### 다. 영국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11)

[조세동향 10-07]

-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은 2010년 3월 24일 '2010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2010 예산안상 세법개정 내용은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자에 대한 투자지원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의 인상을 통해 재정 균형을 꾀하고 있음
- 법인세 분야(business taxation)
  - 세율
    - 2007 예산안에 의하면, 소규모법인<sup>24)</sup>에 대한 법인세율을 당시 19%에서 단계적으로 매해 1%씩 인상하여 2009 회계연도에는 22%<sup>25)</sup>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009 예산안에서 그 인상(21→22%)을 2010 회계연도로 연기한 바 있음
    - 2010 예산안에 의하면, 소규모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계획이 다시 연기되어 2010 회계연도에도 21%의 세율을 계속 적용함
    - 기본세율인 28%<sup>26)</sup>는 2011 회계연도까지 계속 적용함
  -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AIA)
    - 연간투자공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규모 및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연간 £50,000을 한도로 시설 및 기계장치(차량 제외)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과세이익 계산시 공제해 주는 제도임
    - 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연간투

24) 과세소득이 £300,000 이하인 법인을 의미함.

25) FY 2007: 20%, FY 2008: 21%, FY 2009: 22% 적용 예정

26) 과세소득이 £1,500,000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300,000과 £1,500,000 사이인 경우 특정 계산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증가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자공제의 한도금액을 £100,000으로 두 배 인상함<sup>27)</sup>

- 또한 진정한 사업목적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4일부터 관련 반조 회피 규정(Targeted Anti-Avoidance Rule, TAAR)을 도입함
- 초년도공제(first-year allowance)
  - 무탄소 신규차량(zero-carbon vans)에 대해 100%의 초년도공제(first-year allowance)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투자금액의 조기 회수를 지원함
- 비디오게임 산업(Video games industry)
  - 국내 비디오게임 산업의 게임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관련 세제지원을 계획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법규 내용이 확정되면 유럽위원회(EC)의 승인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 개인소득세 분야(individual taxation)

-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인적공제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인적공제를 2009-10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함
-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 영국에서는 1999년 4월 6일부터 개인저축계좌(ISA)제도를 운영하여 동 계좌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7,200을 한도로 소득세나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2011년 4월 6일부터 개인저축계좌 적립한도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Retail Prices Index)에 연동하여 조정함
- 사업공제(Entrepreneur's relief)
  -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해 18%의 단일세율로 자본이득세(CGT)가 과세되고 있으며, 사업공제제도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로 얻은 자본이득 중 최초 £100만<sup>28)</sup>에 대해 그 유효세율이 10%가 되도록 자본이득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임
  - 2010년 4월부터 사업공제에 적용되는 한도금액(lifetime limit)을 일생에 걸쳐 요건을 갖춘 첫 이득금액의 £100만에서 £200만으로 두 배 인상함

27)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6일부터 인상된 한도액을 적용함.

28) 이 때 £100만은 개인에게 일생 동안 적용되는 한도금액임.

-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
  - 영국에서는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0~4%의 세율로 인지세(SDLT)<sup>29)</sup>가 과세되고 있으며, 취득가액이 £125,000 이하인 경우 과세면제하고 있음
  - 2010년 4월 6일부터 취득가액이 £100만을 초과하는 거주주택의 거래에 대해 5%의 세율구간을 추가함
  -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해당 주택을 유일한 거주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가액이 £250,000 이하이면 2010년 3월 25일부터 2012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지세(SDLT)를 과세면제함

□ 간접세 분야(indirect taxation)

- 부가가치세(VAT)
  - 2010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점은 £68,000에서 £70,000으로, 등록취소(deregistration) 기준은 £66,000에서 £68,000으로,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은 £68,000에서 £70,000으로 인상함
- 주세(Alcohol duty)
  - 2010년 3월 29일부터 맥주, 와인,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물가인상률에 추가하여 2%까지 인상함
  - 사과주(cider duty)의 경우 물가인상률에 추가하여 10%까지 인상함
  - 또한 2010년 9월 1일부터 사과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보다 명확히 개정함으로써 와인과 거의 유사한 제품이 적절히 과세될 수 있도록 함
- 담배세(Tobacco duty)
  - 2010년 3월 24일부터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담배세율을 1%까지 인상함
- 유류세(Fuel duty)
  - 주요 유류세 인상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시행될 예정임
  - 1단계: 2010년 4월 1일부터 리터당 1펜스를 인상함
  - 2단계: 2010년 10월 1일부터 리터당 1펜스를 추가 인상함

29) 영국에서 인지세는 그 과세대상에 따라 stamp duty, stamp duty reserve tax(SDRT), stamp duty land tax(SDLT)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3단계: 2011년 1월 1일부터 리터당 0.76펜스를 추가 인상함
- 쓰레기매립세(Landfill tax)
  - 환경법상 등록된 쓰레기매립지역의 운영자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쓰레기매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2014년 4월 1일부터 쓰레기매립세의 표준세율을 톤당 £56으로 £8만큼 인상함
  - 또한 톤당 £2.5의 저세율을 2011~12 회계연도에 동결하고, 저세율 적용기준은 과세처분의 정의와 함께 2010년 말 개정될 예정임
- 골재 채취세(Aggregates levy)
  - 2011년 4월 1일부터 산업용 골재 채취세 세율을 톤당 £2.00에서 톤당 £2.10으로 인상함
- 일반 전화세(Landline duty)
  - 일반 전화세를 도입하여 매달 50펜스를 부과함

### 3. 포르투갈

#### 가. 포르투갈 2010예산안(Budget for 2010)

[조세동향 10-03]

- 재무부는 2010년 1월 26일 2010예산안(Budget for 2010)을 의회에 제출함
  -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 분야
  - 최저한세 기준세율을 15%p 인상함
    - 법인세 납부세액은 조세혜택 및 특례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세액의 75% (현 60%) 이상이어야 함
  - 과세표준 간이계산제도(simplified regime)를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 동 제도하에서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1) 표준장부 기장을 선택하지 않고 (2) 직전연도 매출액이 149,639.37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며 (3) 공인 장부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간주소득에 기초한 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간주소득은 제품 및 상품 매출액의 20%에 기타 매출액의 45%와 6,300유로 중 큰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는 20%의 저세율<sup>30)</sup>로 과세됨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함
- 현행 규정에서는 거주법인이 EU 회원국 내 소재한 법인에 지급한 배당에 대해 과세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1) 유럽경제협정(European Economic Agreement, EEA) 체약국에 소재한 법인, (2) 본점이 다른 EU 회원국 또는 EEA 체약국에 있는 EU 회원국 또는 EEA 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에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과세면제를 적용함
-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함
- 현행 규정에서는 EU 회원국 내 법인이 포르투갈 거주법인에 배분하는 이익에 대해 경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면제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1) EEA 체약국 내 거주법인이 배분하는 이익, (2) 본점이 EU 회원국 및 EEA 체약국에 있는 포르투갈 내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면제를 적용함

□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 조정함
- 연금소득(Category H income)에 적용되는 특별공제를 30,000유로에서 30,240유로로 인상함
- 2010년 장애인이 취득한 근로소득(Category A income), 사업소득(Category B income), 연금소득(Category H income)은 과세되지 않음
- 과세면제 금액 한도는 각 소득유형별로 2,500유로를 적용함

30) 포르투갈에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중 첫 12,500유로에 대해서는 12.5%,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되고 있음

〈표〉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 유로, %)

과세표준		세율
현행	개정안	
~ 4,755	~ 4,793	10.5
4,755 ~ 7,192	4,793 ~ 7,250	13
7,192 ~ 17,836	7,250 ~ 17,979	23.5
17,836 ~ 41,021	17,979 ~ 41,349	34
41,021 ~ 59,450	41,349 ~ 59,926	36.5
59,450 ~ 64,110	59,926 ~ 64,623	40
64,110 ~	64,623 ~	42

- 환경친화적 설비 및 차량 취득가액의 30%를 사업소득(Category B income) 계산시 공제함
  - 이는 4년마다 적용이 가능하며, EUR803을 한도로 함
- 상금(prizes)에 대해 소득세 대신 인지세(Stamp Duty)를 과세함
  - 현행 규정에서는 복권, 빙고게임 등으로 인한 상금은 25%, 콘테스트 및 대회 상금 등은 35%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상금에 대해 35%의 세율(빙고게임의 경우 25%를 적용)로 인지세를 과세하되,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부과함
- 미신고 국외보유자산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신설함
  - 개인이 미신고 국외보유자산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5%를 납부하면 미신고기간 동안의 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단, 신고 시점에 세무조사 중이지 않아야 함
- 사업소득 간이계산제도(simplified regime)<sup>31)</sup> 요건을 간소화함
  - 현행 규정에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149,939.37유로 이하이고, 직전연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99,759.58유로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31) 간이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Category B income)을 제품 및 상품 매출에 0.2, 기타 사업활동 소득에 0.7을 곱하여 계산함.

- 개정안에서는 사업소득이 150,000유로 이하인 경우 간이계산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간소화함

### 나. 포르투갈 2010 긴축계획안

[조세동향 10-07]

- 포르투갈 재정부는 3월 15일 2010~2013년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계획<sup>32)</sup>을 국회에 제출함
  - 150,000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최고소득세율을 현재 42%에서 45%로 인상

〈표 2〉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 과세구간(2010 현재)

(단위: 유로, %)

과세표준 <sup>1)</sup>	세율
~ 4,793	10.5
4,793 ~ 7,250	13
7,250 ~ 17,979	23.5
17,979 ~ 41,349	34
41,349 ~ 59,926	36.5
59,926 ~ 64,623	40
64,623 ~ 150,000	42
150,000 ~ <sup>2)</sup>	45 <sup>2)</sup>

주: 1) 과세표준 구간은 2010 포르투갈 예산안에서 확대 개편되어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최종 승인됨

2) 3월 15일 재정적자감축 계획안에 추가된 구간과 세율

자료: Portugal, Individual Taxation, IBFD

- 주식시장에 대한 자본이득이 연간 500유로 이상일 경우 자본이득세<sup>33)</sup>(세율 20%)를 부과함

32) 투자감축과 임금상승 억제로 2013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2.8%까지 줄일 계획이며, 현재 유로존의 재정적자 기준은 3%로 이를 밑도는 수준

33) 현행은 면제

- 현재 허용되고 있는 소득공제나 조세혜택 금액이 일정소득 한도로 제한됨
-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정책 분담금과 관련된 공제혜택 폐지
- 연간 연금소득 22,500유로 이상에 대해서 적용되던 공제액(현재는 6,000유로)이 감소됨
- 사회보장기여금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조세회피(탈세)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 4. 노르웨이

### 가. 노르웨이 구조조정세제 개편

[조세동향 10-05]

- 재무부는 2010년 1월 18일 합병 및 분할 등 구조조정 세제의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세제 개편 논의문서를 발행함
  - 논의문서와 관련해서는 2010년 6월 1일까지 공개의견(public comments)을 수렴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세특례 적용대상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구조조정시 비과세되는 과세특례 혜택은 당사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적용되고 있음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국법인 및 그 주주가 특별세액공제(specific tax relief)를 신청하고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
  - 논의문서에서는 다음의 국외 구조조정거래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내 유한회사가 유럽경제구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내 국가의 거주법

인과 합병 및 분할하는 경우

- 국내 유한회사의 모든 주식을 EEA가 아닌 고세율 국가의 거주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해당 국가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단, 신설법인이 EEA가 아닌 저세율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
- 조세중립적인 국외 구조조정거래를 계획하는 내국법인이 별도의 신청 없이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시간 및 비용의 절감과 아울러 해당 기업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과세특례 요건(Legality Requirement)

- 현행 규정에 의하면, 회계규정(accounting rules) 및 회사법에 따른 구조조정이 과세특례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음
- 단, 동 요건을 위반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특례 혜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중요성에 대한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조조정 절차 완료 후 10년 동안 피합병법인 및 그 주주는 과세특례 조치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논의문서에서는 회계 및 회사법에 따른 구조조정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함
- 구조조정 거래가 회계상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구조조정 당사법인 및 그 주주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실질우선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인 합병 및 분할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미인식 이득 등 관련 조세지위가 합병법인에게 이전됨
- 단, 합병 및 분할을 가장하여 조세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르웨이는 실질우선의 원칙(substance-over-form doctrine) 및 특별 과세조항을 두어 합병 및 분할이 조세지위의 양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세지위를 박탈하고 있음

- 논의문서
  - 첫째, 과세특례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조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합병, 분할 및 주식거래뿐만 아니라 기타의 조직재편(re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적용함
  - 둘째, 사업 활동의 계속성 요건(continuity requirement for business activities)을 도입하여 구조조정 전후로 피합병법인 등의 사업 활동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조세지위를 박탈함
  - 단, 지주회사 및 별도의 사업 활동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계속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5. 그리스

### 가.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제 개편

[조세동향 10-07]

- 3월 5일, 그리스 국회는 재정적자 감축<sup>34)</sup>을 위해 긴급한 세제조치를 담은 새로운 법률안을 채택함
- 동 법률안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사치세(luxury tax) 도입, 개별소비세 인상 등의 간접세 개정과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기준액 및 최고세율 인상 등의 직접세 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함
  - 부가가치세율과 관련하여 기본세율과 경감세율이 모두 인상되었고(기본세율: 19 → 21%, 경감세율: 9 → 10%), 이는 2010. 3. 15부터 적용함
  - 특별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 새롭게 사치세(luxury tax)를 도입함
  - 유류, 주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sup>35)</sup>(excise duties)를 인상함

34) 이번엔 내용은 긴축안은 GDP의 2%p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GDP의 4%p, 100억유로)의 절반에 해당

35) 유류세 8%, 담배·주류 추가 인상

- 2009년에 100,000유로 이상의 고소득을 가진 국회 직원과 공무원<sup>36)</sup>에 대해 일회성으로 1%의 임시분담금을 부과함
- 개인소득세의 최고 과세구간 및 그 적용세율을 75,000유로에서 100,000유로로, 40%에서 45%로 인상함
- 회사 소유의 국내부동산과 이러한 자산에 대한 용익권<sup>37)</sup>(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동산특별세를 3%에서 15%까지 인상함

〈표 1〉 그리스의 개인소득세 과세구간(2010 현재)

(단위: 유로, %)

근로소득		기타소득	
과세 구간	세율	과세 구간	세율
-	-	10,500	0
12,000	0	15,000	15
18,000	24	18,000	24
45,000	35	45,000	35
75,000 초과	40	75,000 초과	40

자료: Greece - Individual Taxation, IBFD

## 6. 스페인

### 가. 스페인 2010 재정법 공포

[조세동향 10-07]

- 2009년 9월에 발표된 예산안에 기초하여 비거주자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몇 가지 주요한 수정을 거친 최종법률안이 2010년 3월 1일자 관보(Official Gazette)를 통해 공포되었고, 수정된 법률은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

36) 그 외 공무원의 부활절, 성탄절, 휴가철에 받는 보너스 30% 삭감, 공무원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12%) 등.

37)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비거주자 소득세

- 스페인에서 취득한 이윤에 대한 배당이나 지분 참여시 새로운 공제제도가 도입
  - ① EU 회원국에 속하는 적격인 연금계획(Pension Plans)
  - ② 2009년 7월 13일 법령에 의해 승인된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 비거주자 소득세법은 스페인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개정되었고,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거주납세자와 동일한 비용 공제를 허용하되, 여전히 현행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소요비용이 스페인에서 얻은 소득과 직접 관련된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납세자
  - 스페인에서 수행된 사업이라는 명확한 연관관계를 제공하는 납세자

□ 소비세: 실행규정 수정

- 소비세법은 과세가능 상품에 대한 새로운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개정<sup>38)</sup>되었고, 개정사항은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주요 내용
  - 대상물품이 전량 폐기되었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은 경우, 회원국의 적격한 기관에서 폐기(손실)가 결정되었다면 과세하지 않음
  - 제조업, 도소매업, 운송업 등에서 발생한 과세가능 물품의 손실과 결함에 대한 제한 조건 규정
  - 전자부기에 대한 허가
  - 면세가계의 상품인도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 실행규정 수정

- B2B와 B2C 서비스의 구별
  - B2B 서비스는 소비자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
  - B2C 서비스는 공급자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

38) 이러한 조치는 2008년 12월 소비세 전반에 대한 조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2010년 3월 2일 Official Gazette에서 공포함.

-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스페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청하는 것이 허용됨

## 7. 아일랜드

### 가. 아일랜드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

[조세동향 10-01]

-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09년 12월 9일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을 발표함
  - 2010 예산안상 세법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법인세 분야
  - 법인세율
    - 12.5%의 법인세율은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그대로 유지함
  - 창업회사(start-up companies)에 대한 조세감면
    - 2009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개시 후 첫 3년 동안 40,000유로를 한도로 사업소득,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
    - 개정안에서는 이를 2010년 사업개시 법인에까지 연장 적용함
  - 가속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scheme)
    - 에너지효율 설비에 대한 가속자본공제 적용대상에 냉장 시스템, 전기기계 시스템 등을 추가함
  -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 첫해에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PRSI)를 전액 면제함
    - 이를 위해 3,600만유로를 고용주 직업장려계획(Employer Jobs Incentive Scheme)에 할당함

□ 소득세

- 고소득자에 대한 최소유효세율(minimum effective rate)
  - 2007년부터 연간 과세소득이 500,000유로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각종 공제·감면 적용 후 최소유효세율로 20%가 적용되어 왔음<sup>39)</sup>
  - 2010년부터는 연간 과세소득이 400,000유로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소유효세율을 30%로 인상함<sup>40)</sup>

□ 기타

- 부가가치세(VAT)
  - 201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1.5%에서 21%로 인하함
- 탄소세(carbon tax)
  - 탄소세를 톤당 15유로의 세율로 도입함
- 자동차등록세
  - 2010년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차량을 폐기하고 CO<sub>2</sub>배출량이 낮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500유로를 한도로 자동차등록세를 면제함
  - 또한 전기차량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량(2,500유로의 한도 적용)에 대한 자동차등록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함

나. 아일랜드 2010 재정법 발행

[조세동향 10-04]

□ 정부는 지난 2010년 2월 4일 2010 재정법(Finance Bill 2010)을 발행함

- 이는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에서 발표된 내용 외에 여러 세법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증세에 초점을 두고 있음

39) 연간 과세소득이 250,000 ~ 500,000유로인 경우 최소유효세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연간 과세소득이 250,000유로 미만인 경우 최소유효세율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음.

40) 연간 과세소득이 125,000 ~ 400,000유로인 경우 최소유효세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연간 과세소득이 125,000유로 미만인 경우 최소유효세율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음.

□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legislation) 도입

- 도입 목적
  - 아일랜드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납세자가 국내 또는 국외 특수관계자<sup>41)</sup>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취득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정상가격(arm's-length price)<sup>42)</sup>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일랜드의 재정에 손해가 없도록 함
- 적용방법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비용이 과대계상(overstated expenses)되거나 수익이 과소계상(understated trading receipts)되어 아일랜드에서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 해당 비용과 수익을 이전가격 조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적용제외
  - 종업원 수가 250명 이하이고 연간 매출액이 5천만유로 이하이거나 총자산이 4,300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적용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2010년 7월 1일 이전에 합의한 계약 및 조건에는 적용하지 않음

□ 주거과세(Domicile levy) 도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해 200,000유로의 주거과세를 도입함
  - 아일랜드에 주소가 있을 것
  - 아일랜드 소재 재산가액이 500만유로를 초과할 것
  - 전 세계 소득이 100만유로를 초과할 것
  - 아일랜드에서 소득세 납부세액이 200,000유로 이하일 것
- 주거과세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아일랜드에서의 거주 여부 또는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납부해야 하며, 아일랜드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41) 아일랜드 법인세법에서는 50% 이상의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42) 정상가격은 “다국적기업 및 과세관청을 위한 OECD 이전가격지침(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에 따라 결정함.

□ 소득세 세액공제 축소

- 장기보험증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2010년부터 축소
- 주택담보대출이자(mortgage interest) 공제를 2018년부터 폐지함
  - 2004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 발생한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함
  - 2012년에 발생한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이자의 경우 2017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율은 줄어들 것임
  - 2013년 이후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이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8. 핀란드

### 가. 핀란드 부가가치세율 변동

[조세동향 10-02]

- 2010 예산안(Budget Bill for 2010)에 의하면, 2010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될 예정임

〈핀란드의 부가가치세 세율〉

구분	세율	
	현행	개정안
표준세율	22	23
기초 식료품 및 동물사료	12 <sup>1)</sup>	13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	22	13
의약품, 서적, 문화행사, 대중교통, 호텔 서비스 등	8	9
신문 및 잡지 구독, 비영리단체의 회원 발간물 등	0	0

주: 1) 2009년 10월 1일 이전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됨

## 9. 네덜란드

### 가. 네덜란드 innovation box 제도 도입

[조세동향 10-08]

- 네덜란드 정부는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 innovation box regime를 도입함
  - innovation box regime : 적격한 무형자산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써 2007년에 도입된 patent box 제도를 확대한 것임
    - patent box regime : 특허권과 R&D관련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소득(income)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innovation box regime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며, 납세자는 innovation box regime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innovation box regime 개요
  - 적용대상 납세자
    - 특허권 : 등록된 특허권 소유자나 등록된 특허권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 기타 R&D 무형자산 : 관련 적격 무형자산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 기타 R&D 무형자산의 납세자는 관련 적격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자일 필요는 없음
  - 계산 구조 : 특례세액 = 적격 과세소득 × 특례세율(5%)
    - 적격 과세소득은 적격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 적격 무형자산
  - 납세자가 창출한 다음의 무형자산은 적격한 무형자산으로 분류됨
    -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네덜란드나 외국의 특허권
    - 네덜란드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에서 부여하는 R&D 인증서(S&O

verklaring)를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

- 따라서 특허권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innovation box regime을 적용할 수 있음
- 이에겐 소프트웨어나 영업상 기밀과 같은 특허권을 생성하지 않는 무형자산의 개발이 포함됨
- 다만, marketing 무형자산이나 상표(brand)는 innovation box regime에서 제외됨
- 또한 특허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중 최소한 30% 이상이어야 함
- 따라서 제조 노하우와 같은 기타의 무형자산은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적격 과세소득

- 적격 과세소득은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
- 이에겐 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 로열티 수입, 및 자본이익을 포함함
- 적격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 적격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수입 - 당해 적격 무형자산 관련 필요경비(무형자산상각비 등)
- 적격 무형자산 관련 필요경비는 일반 법인세율로 공제할 수도 있음
- 적격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최대한도는 없음
- 다만, 2010년 이전에 적용된 patent box regime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될 소득은 R&D 투자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음

□ 세율과 납부세액

- 적격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 5%
- 현행 법인세율은 25.5%
- 2010년 이전에 적용된 patent box regime하에서는 10%임

III

아 시 아



## Ⅲ 아 시 아

### 1. 일본

#### 가. 일본 2010 세제개혁

[조세동향 10-02]

- 정부는 12월 22일 201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신정권하에서의 세제 전반에 걸친 개혁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음
  - 세제개혁의 기본 방향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평·투명·납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함
    - 비용 분담을 중요시하며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일체적인 개혁을 추진함
    -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제 본연의 자세를 고려하고 지역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세제를 구축함
  
- 각 세목별 개혁 방향 및 개정사항
  - 개인소득과세
    -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고 소득세 정상화를 위해 세율구조의 개혁,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환급세액공제, 수당으로의 전환 추진
    - 자녀수당의 신설과 동시에 연소부양친족(15세 이하)에 대한 부양공제(38만엔) 및 16~18세 자녀에 대한 추가부양공제(25만엔)를 폐지
    - 개인주민세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소부양친족(15세 이하)에 대한 부양공제(33만엔) 및 16~18세 자녀에 대한 추가부양공제(12만엔) 폐지
  - 법인과세
    - 조세특별조치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과세베이스가 확대된 후에 성장전략과의

- 정합성이나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의 유지·향상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율을 재검토
- 100% 그룹 내의 내국법인 간에 자산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양도손익의 과세이연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세제 정비
- 특수지배동족회사의 업무주재 임원급여의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국제과세
  - 국제과세를 둘러싼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과세·징수를 확보하고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세무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화·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국외 진출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더욱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 합산세제에서 특정 외국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현저하게 낮은 조세부담비율의 기준을 현재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인하
- 자산과세
  -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의 비과세 조치에 대해서 소득 제한을 부여하고, 현재 500만엔인 비과세한도액을 2010년에 1,500만엔, 2011년에는 1,000만엔으로 인상
- 소비과세
  -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 및 경유인수세의 경우 원유가격 등의 안정적인 추이와 지구온난화대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당분간 현재의 세율 수준(휘발유세와 지방휘발유세는 53,800엔/kl, 휘발유인수세는 32,000엔/kl)을 유지
  - 자동차증량세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에 의한 추가분의 약 2분의 1에 상당하는 규모의 세부담 경감을 실시
  - 담배세는 1개비당 3.5엔(국가, 지방 각 1.75엔)의 세율 인상(가격 상승은 5엔 정도)을 실시(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
- 주민공익세제
  - 인정NPO법인제도에 대해 인정수속과 신청서류 등의 간소화 실시
  - 소득세의 기부금공제 적용 하한금액을 현재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
- 납세환경 정비
  - 납세자권리현장(가칭)의 제정, 국세불복심판소의 개혁, 사회보장세금의 공통번호제도 도입, 세입청의 설치 등에 대해서 검토

- 탈세법과 관련된 징역형의 상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고 국세 관련 벌칙도 재검토
-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
  - 국가의 정책세제 241개 항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2개 항목을 재검토 대상으로 하고 이중 41개 항목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감축
  - 지방의 정책세제 조치인 286개 항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0개 항목을 재검토 대상으로 하고 이 중 57개 항목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감축
- 조특투명화법(가칭)
  - 조세특별조치의 적용 실태를 분명히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에 「조특투명화 법안(가칭)」을 제출할 예정

## 2. 싱가포르

### 가. 싱가포르 2010년 예산안

[조세동향 10-06]

- 2010년 2월 22일 싱가포르 재정부는 201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일반적인 세제 변화
  - 법인세는 2009년과 동일하게 2010년에도 17% 유지
  - 창업기업 지원
    -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2010년부터 효력을 가지고 최초 3년간 감면혜택을 누리며 세율은 다음과 같음
    - 소득이 최초 S\$<sup>43)</sup>100,000까지 0%
    - 소득이 S\$100,001~S\$300,000까지 8.5%

43) S\$는 3월 22일 현재 812.07원임.

- 소득이 S\$300,000을 초과 시 17%
- 초기투자자(Angel Investors)의 공제제도 도입
  - 초기투자비용을 최소 S\$100,000 투자한 승인된 초기투자자에게는 2차년도 말에 그 때까지 투자한 금액의 50%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손금산입의 최고한도는 연간 S\$500,000임
  - 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임
  - 이 제도는 SPRING 싱가포르<sup>44)</sup>가 권장함
- 역외보험업(offshore insurance businesses) 특례세율
  - 역외보험업에서 얻은 적격한 소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이 적용
  - 2010년 4월 1일 도입되며, 10년간 유효함
  - 이 제도의 새로운 신청자는 인원 수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비거주 연예인의 원천징수세율 감소
  - 싱가포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 연예인(public entertainer)의 총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2010. 2. 22 ~ 2015. 3. 31까지 15%에서 10%로 감소시킴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증세
  - 외국인 근로자 과세는 3년간 점진적으로 증세 예정
  -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근로허가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매월 S\$10에서 S\$30으로 세율이 증가하게 됨
  - S-패스 소지자에 대해서는 세율이 현재 매달 S\$50에서 매달 S\$100로 증가될 예정

#### □ 세제지원

- 생산혁신 지원제도(PIC: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도입
  -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새로운 경제 로드맵으로 ESC<sup>45)</sup>의 권고에 따른 광역적인 세제지원 혜택임
  - PIC는 생산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에 공제를 제공하는데, 적격한 지출에 대

44) SPRING 싱가포르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부문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기업개발 기관으로 주로 기업의 회계, 관리·개발, 기술·혁신 등 기업의 시장적응능력을 지원함.

45) 경제전략위원회(Economic Strategies Committee)

- 해 연간 250%의 손금산입을 인정<sup>46)</sup>하며, 한도는 S\$300,000임
- 자격을 갖춘 투자대상은 다음과 같음
  - ①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R&D
  - ② 지적재산권(IP) 등록 및 획득
  - ③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디자인
  - ④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의 자동화
  - ⑤ 고용인 교육
- DEI(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제도 연장
  - 싱가포르에 사업체를 두고 국제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회사의 소득에 적용하는 특례세율로, 싱가포르의 국제법률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장됨
  - 적절한 국제법률서비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이 적용
  - 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로, 5년간 적용
- 선박중개업(ship broking) 및 운임선도계약(FFA:Forward Freight Agreement)에 대한 지원
  - 싱가포르에서 운임선도계약(FFA)이나 선박중개업(ship broking)관련 거래사업자에게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됨
  - 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로, 5년간 적용
- MFI<sup>47)</sup>(Maritime Finance Incentive) 연장
  - 일몰이 2011년 2월 28일에서 2016년 3월 31일로 연장
- CFR(Course Fees Relief) 강화
  - 최대 공제액은 S\$3,500에서 S\$5,500으로 확대
  - CFR은 직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원하는 감면제도로서, 직업교육과정·세미나·회의 등 현재의 직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감면요청이 가능
- 기부에 대한 손금산입 강화
  - IPC(공공단체)나 다른 승인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250%(2009년 200%)로 손비인정액이 증가하고 2010. 1. 1 ~ 2010. 12. 31까지 연장됨

46) 기존의 R&D 활동의 지출에 대해서는 150% 공제가 허용되었음.

47) 이 제도는 해양선박 및 컨테이너 관련 사업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적절한 자격을 가진 기업들의 리스소득 등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함.

□ 기업관련 세제 변화

- M&A 공제제도
  - 2010. 4. 1 ~ 2015. 3. 31까지 적극적인 M&A를 수행한 경우에 적용
  - 공제는 획득자산가치의 5%까지, 최고 S\$500만까지 적용
  - 적극적인 M&A 거래의 비상장주식 교환시 인지세는 면제되고 연간 S\$200,000까지 적용
- LIA(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 도입<sup>48)</sup>
  - 이 제도는 9개 부문<sup>49)</sup>의 지역집중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건축물의 건설시 발생된 자본지출에 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이며, 첫 해 25%의 공제가 허용되고, 연간 5%의 공제율이 적용됨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5년간 유지되며, 경제개발부처인 EDB<sup>50)</sup>에서 관장하고 2010년 6월에 세부계획 발표 예정
- 세제혜택 중지
  - 싱가포르 선물거래소(SGX)와 상품거래소(SICOM)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
  - Approved Start-Up Fund Manager 제도도 2010년 2월 17일로 종료
- 면세소득으로 처리되었던 SPV(특정 목적의 차량)의 선박운항 서비스 이용 시 2010년 2월 22일부터 선박운항수수료가 부과됨

□ GST(부가가치세)

- 해양산업에 대한 영세율의 범위 확대
  - 이 제도는 적극적인 선박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휴양 목적의 선박이나 적극적인 선박·비행기의 설치나 사용을 위해 공급되는 제품 그리고 공해를 통해 승객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 수입 GST 연기 제도 도입
  - 싱가포르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

48) 1940년대 산업화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던 IBA(Industrial Building Allowance)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

49) 제약제품, 석유, 항공우주, 태양전지제조, 석유화학제품, 직업, 해양 및 해양공학, 기타화학제품

50) Economic Development Board

며, 적절한 수입업자는 물품 수입시 적어도 한 달 동안 수입 GST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GST 회계 규정 간소화
  -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거래시 관리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재산세(Property tax)

- 누진재산세<sup>51)</sup>가 2011년부터 도입되고, 과세 가능한 소유자 거주주택에 적용되며 세율체계는 다음과 같음
  - 최초 S\$6,000까지 0%(연간)
  - 이후 S\$59,000까지 4%(연간)
  - S\$65,000을 초과시 6%(연간)
- 비거주주택이나 기타자산에 대해서는 계속 10%의 재산세 적용

□ 개인소득세

- 배우자공제
  - 배우자의 소득이 S\$4,000<sup>52)</sup>(기존 S\$2,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S\$2,000의 배우자 공제가 가능
- 부모공제
  - 부모공제는 부양가족과 동거시 S\$7,000(기존 S\$5,000), 비동거시 S\$4,500(기존 S\$3,500)까지 공제금액이 확대되며, 이는 부모의 소득이 S\$4,0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됨
  - 부모가 장애가 있을 경우 동거·비동거에 따라 각각 S\$11,000(기존 S\$8,000)과 S\$8,000(기존 S\$6,500)으로 공제금액 확대
- 적절한 자녀공제

51) 이 제도는 기존에 '94년부터 시행되던 재산세환급제도(property tax rebate)인 소유자 거주주택의 연간가치 S\$100,000에 대해 S\$25~S\$150의 환급이 적용되던 제도가 대체된 것임.

52) 배우자, 부모, 자녀, 취업모 등과 관련된 공제의 경우 2010년 공제 자격요건 소득기준이 S\$2,000에서 S\$4,000으로 확대됨.

- 부양자녀의 소득이 S\$4,0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취업모의 경우는 적격한 조건에 따라 취업모감면(WMCR)을 신청할 수 있음
- CPF(Central Provident Fund) cash Top-up 감면<sup>53)</sup>
-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CPF Cash Top-up 공제는 현재의 소득한도 S\$2,000에서 S\$4,000으로 확대되고 2011년부터 효력 발생
- 장애가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한도조건을 두지 않음

### 3. 홍콩

#### 가. 홍콩 2010/11 예산안

[조세동향 10-06]

- 홍콩의 재정부는 Budget 2010/11을 2월 24일에 발표하였고, 이 예산안은 별도의 수정내용이 없으면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직접세
  - 법인세
    - 환경친화적 차량을 위한 자본지출의 경우 100% 손금산입 허용
    - 지적재산권(등록상표, 저작권, 디자인등록 등)을 위한 자본지출의 경우 손금산입 확대
    - 적격채무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사업)소득의 경우 정상세율의 50%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만기 3년 미만도 허용하며, 홍콩국공채발행이라는 조건도 완화됨
    - 선물거래를 위한 국외펀드에 대해 조세감면이 연장되며, 이런 이유로 인해 선물거래와 주식거래의 목록은 내국세법(령)을 통해 갱신됨
  - 개인소득세
    -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2009/10 회계연도에 한하여 최종납세액의 75%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최대 감면액은 HK\$<sup>54)</sup>6,000임

53) 그 외 CPF\_MA, MEEF, PSEA 등의 제도도 강화되었는데, 소득 및 나이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세법센터 분기보고서 발간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임.

□ 간접세

○ 인지세

- HK\$2천만 이상의 자산 거래시 인지세가 3.75%에서 4.25%로 인상되며, 이러한 거래시 구매자에게 인지세 납부가 연기되던 것도 폐지됨
- 홍콩 주식의 40%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지수연동펀드에 대한 거래의 경우는 인지세 특혜가 연장됨

○ 기타조세

- 2010/11 과세보유자산별로 분기당 HK\$1,500 한도로 부동산세가 면제
- 연간 사업등록세 면제
- 입국인에 대한 담배의 면세혜택을 폐지

---

54) HK\$는 3월 22일 현재 146.39원임.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제1호

---

2010년 5월 28일 인쇄

2010년 5월 30일 발행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1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2186-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0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